

제427회 국회  
(임시회)

#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7월22일(화)

장 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현법 재판관 재판관후보자(오영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79)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81)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01)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76)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56)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30)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24)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48)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 위원장 제출)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20)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57)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87)

2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09)

---

**상정된 안건**

1. 현법 재판소 재판관후보자(오영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79)	3
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81)	3
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회장 제출)	3
5.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교육위원회장 제출)	3
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회장 제출)	3
7.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회장 제출)	3
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회장 제출)	3
9.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01)	17
10.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76)	17
11.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56)	17
1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30)	17
1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24)	17
14.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48)	17
15.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17
16.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 위원장 제출)	17
17.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18
18.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18
19.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18
20.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20)	38
21.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38
22.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38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39
2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57)	39
24.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39
2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87)	42
2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09)	42

---

(14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춘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오영준)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고 타 상임위 법안을 심사한 후 고유법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

## 1.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오영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03분)

○위원장 이춘석 의사일정 제1항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오영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종합의견(안)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나온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 등을 반영하였으며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의답변 요지 부분은 어제 행정실에서 오후 4시까지 의견을 요청드렸고 그때까지 보내 주신 내용을 반영해서 송부하겠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종합의견(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경과보고서의 경미한 자구 정리와 첨부자료의 추가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타 상임위 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

## 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79)

### 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81)

### 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회 제출)

### 5.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교육위원회 제출)

### 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회 제출)

### 7.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회 제출)

### 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회 제출)

(14시04분)

○위원장 이춘석 의사일정 제2항부터 8항까지 교육위 소관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은정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정 의사일정 제2항부터 8항까지 7건의 교육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법률안에 대하여 주서된 수정의견은 교육부와 협의하여 제시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를 두고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경영위기대학에 대하여 재무구조의 개선, 사립대학의 통폐합 및 폐교·해산 등의 구조개선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 계획 등에 따른 폐교·해산의 절차와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5호의 사립대학의 통폐합이란 사립대학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대학에 흡수되거나 서로 통합하여 새로운 대학이 신설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는데 본래 입법 취지에 따라 사립대학 통폐합의 대상에 학교법인을 추가하였고 흡수 및 통합의 대상이 되는 다른 학교를 구체화하여 사립대학뿐만 아니라 국립학교와 공립학교도 포함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교육부와 협의하였습니다.

안 제6조 1항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 위원 12인 중 6인의 위원을 국회의 추천을 반영하여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추천을 반영한다는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국회 추천 규정을 둔 취지에 부합하도록 12인의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 중 6인의 위원은 국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교육부와 협의하였습니다.

3페이지 하단입니다.

안 제26조제1항 제정안의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 위원 및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임직원의 직무상 비밀누설 행위에 대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정안의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와 한국사학진흥재단에는 형법상 비밀누설죄의 적용을 받는 직역인 공인회계사 등이 참여하고 있고 해당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 내용의 보호 필요성이 누설 시 형사처벌을 받는 교권보호위원회 등의 직무상 비밀에 비해 작다고 할 만한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려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 교육 관련 입법례와 그 형량을 참조하여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 위원 및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임직원의 직무상 비밀누설 행위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교육부와 협의하였습니다.

4페이지 하단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교과용도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자료의 개념을 신설하여 AI 디지털교과서를 학교장이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할 수 있는 교육자료로 정의하는 내용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교과서·지도서와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일명 AI 교과서를 제외한 음반·영상·전자책 형태의 교과용도서가 교육부장관의 검인정 등을 마친 것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정의 규정을 수정하였고, 음반·영상·전자책 형태의 교과용도서가 서책형 교과용도서의 대체품이 아니라 서책형 교과서와 함께 보조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수정하였습니다.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기존 교과용도서는 이 법 시행 후에도 교과용도서로 인정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수정하였고 기존에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인용하고 있던 다른 법률의 추가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추가로 교육부는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학교장이 교육자료로 선정하는 데 따라야 하는, 교육부장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협의하여야 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해당 조항의 시행일을 2026년 9월 1일로 하고 학교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2025년 2학기까지 기존에 검인정되어 사용되던 AI 교과서를 교과용도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및 제6항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2항 및 제7항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춘석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대체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곽규택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십시오.

토론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곽규택 위원 차관님이신가요?

○위원장 이춘석 최은옥 교육부차관님께서 출석해 계십니다.

○곽규택 위원 차관님, 초·중등교육법 개정법률안, AI 교과서를 교과서의 지위가 아니라 그냥 교육자료로 만든다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지난 정부에서는 교육부에서 강하게 반대를 했었는데요. 지금 교육부의 입장은 어떠신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위원장님,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춘석 예,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최은옥 AI 관련된 자료들을 교과용도서로 하느냐 교육자료로 하느냐 그것은 사실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AI를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교육의 질을 높여야 된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일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AI를 활용해서 교육의 질을 높여 갈 것인데, 지난 정부 때 교과용도서로 하던 것을 급격하게 교육자료로 변경하게 되는 것에 따른 현장의 혼란은 약간 있습니다만 저희가 봤을 때 장기적으로는 교육자료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장점이 많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오늘 법안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육부로서는 그것에 맞는 후속 조치를 최대한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곽규택 위원 그런데 AI 교과서 개발한다고 상당히 큰 예산이 들어간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곽규택 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당장 교육자료로 이렇게 변경시키면 또 혼란이 올 것 같고. 예산이라고 하는 게, 기존에 사용됐던 예산이 사실은 사장되는 면도 큰데 이것을 경과규정을 조금 더 뒤 가지고 한 1년 정도 더 교과서로 한번 해 보고 검토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검토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상임위에서 논의할 때 경과규정까지는 심도 있게 논의가 되지는 못해서—지금 자료에는 있습니다만—부칙에 경과규정 두 가지를 두는 것을 제안했는데 이것도 발의하신 의원실과도 협의했고 교육위원회와 전체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일단

자료 낸 이후에. 그런데 그 경과규정 중의 일부는 수용을 해 주신다는 의견이시고 다른 건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는 교육위원회에서 정해 주신 전체적인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곽규택 위원** 교육부에서 경과규정에 대한 의견은 처음에 어떻게 가지고 계셨습니까?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일단 교육자료로 했을 경우에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검증을 거치는, 개인정보가 보호되도록 하는 내용이 필요한데 교과용도서일 경우가 아니라 교육자료일 경우에는 그 절차가 제대로 지금 현재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 마련을 위해서 저희가 경과규정을 내년 9월까지……

○**곽규택 위원** 내년 9월까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두는 것을 요청드렸고요.

또 하나는 작년에 검인정을 받아서 현재 사용하는 교과서에 대해서 올해 말까지, 그러니까 내년 2월까지지요. 내년 2월까지는 그 건에 대해서만 그대로 교과서의 지위를, 작년에 검정받은 것에 대해서만 교과서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러면 그 두 번째 경과규정, 검증받은 교과서에 대해서는 내년 2월까지 교과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경과규정에 대해서 지금 안 받아들여진 상태인가요, 교육위에서?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곽규택 위원** 물론 AI 교과서에 대해서 학부형들이나 일선 교사들도 찬반 의견들이 다 있는 것 같고, 특히 교육 현장에서 당장 교과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이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다시 제도를 바꾼다고 할 때는 경과규정을 뒤 가지고 조금 안착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교육부에서 그런 것을 조금 더 강하게 주장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전체적으로 교과용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가는 것으로 방향이 이제 정해진 거기 때문에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교육부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앞으로 해 나갈 것이고요.

○**곽규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석** 잠깐 장동혁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어차피 곽규택 위원님의 질의 내용 중에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법사위에 이 법안이 제출된 이후에 교육부에서 부처 조항에 대한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원칙적으로 타 상임위 법안에 대해서는 우리 법사위가 체계 심사 범위 내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보완을 요청한 두 부분인 제1조와 2조 다 검토해 본 결과 1조도 체계·자구의 범위를 벗어나고 제2조도 체계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조는 시행시기를 늦추는 거고 2조는 단서로써 본문의 내용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교육위원회에 이 의견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요청했고 교육위원장께서 제1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2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하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1조에 대해서는 여기서 우리 법사위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반영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제2조에 대해서는 체계·자구의 범위 내에서 교육위가 동의하지 않는 것을 우리 법사위에서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차관께서 이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는 이 법안을 다시 교육위에 회부할 거고, 이 조항의 수정 필요 없이 나머지를 그대로 통과시켜 달라라고 요청을 하면 법사위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차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두 번째 부칙 조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면 더 좋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것이 다시 교육위로 가서 논의되는 것은 저희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부칙 조항을 담지 않고 개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학교 현장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그러면 부칙 조항은 제1조만 저희가 여기서 논의의 대상으로 하고 2조는 논의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나머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장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혁 위원** 차관님, 일단 축하드립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장동혁 위원** 지금 부칙 조항 2조의 경과규정도 원칙적으로 교육부는 그 내용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다시 교육위로 돌아가서 논의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1조만 반영해서라도 오늘 통과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2조가 필요한 이유가 구체적으로는 뭐 때문에 필요한 건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2조의 내용이, 작년에 검인정한 교과서를 올해 쓰고 있는데 지금 1학기에 쓰고 있는 학교가 있고요. 그래서 올해 1학기에 썼으니 하반기에도 동일선상에서 사용을 하여야 학교 현장에서 여러 가지……

○**장동혁 위원** 혼란이 없잖아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장동혁 위원** 그러니까 이미 시행됐고, 물론 장기적으로는 교과서가 아니라 교육자료로 바꾸는 것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도 일단 정해졌으니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 쪽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가 1조, 2조 두 가지 아닙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장동혁 위원** 그러면 1조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에서도 동의를 하셨다고 했고 교육위에서 동의를 했지만 2조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차관님께서 더 설득을 하시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래야 교육 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신 다음에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면 전체회의에 계류해서 '2조까지도 필요하다고 하니 교육위원회에서 좀 전향적으로 의견을 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설득을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단 안 받아들여지니 교육위에 다시 가기는 쉽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교육부에서 과연 이 제도를 다시 바꿈으로 인해서 오는 혼란에 대해서 그 혼란을 최소화할 의지가 있는가 저는 의문이고요.

저는 지금 제2조에 대해서도 교육자료로 그냥 남기고 교과서로 활용하지 않는다 하더

라도 그 정도의 경과규정은 두어야만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 ‘이미 방향성은 정해졌으니 저희들은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학기 동안 써 본 결과, 한 학기 동안 써 보셨고 평가를 해 보셨을 거지 않습니까? 교과서로 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던가요? 뭐 때문에 이걸 교과서로 하면 절대 안 되고 교육자료로 가야 된다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선뜻 동의를 해 주셨냐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길래.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낫기 때문에 교육자료로 장기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고, 한 학기 해 보고 나서 갑자기 교육자료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선뜻 동의해 주셨다는, 그 동의한…… 문제가 있으니까 동의했을 거지 않습니까. 아니면 지금 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교육자료로 가는 것이 교육 현장에서는 훨씬 더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겠습니다라고 판단하신 근거가 있을 텐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교육자료로 방향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부가 동의했는지 저는 그 설명부터 듣고 싶습니다. 말씀 좀 해 주세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국정교과서로 갔을 때는 아무래도 그 국정교과서라는 체제 자체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지금 AI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자료가 나오고 AI 기능 자체도 굉장히 급변하게 변하는데 국정교과서라는 무거운 체제를 가지고는 그것을 따라잡고 굉장히 적시성 있게 교육을 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위원** 교육자료로 바뀌면 적시성 있게 교육을 할 수 있고요? 결국 사실은 학부모님들이 AI 교과서를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요? 그 내용과 활용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교실에서 이런 기기를 가지고 과연 수업에 집중하고 그것을 제대로 100% 학습에만 활용할 것인지 그게 불안해서 안 되겠다고 하는 게 학부모님들이 우려하는 가장 큰 것 아닌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그런 우려 있습니다.

○**장동혁 위원** 그러면 교육자료로 활용하면 괜찮아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그것은 교과서로 가든지, 그러니까 약간의 디지털기기에 대한 중독 문제 이런 걸 우려하시는는데……

○**장동혁 위원** 그러니까 교육자료로 가면 괜찮고 교과서로 가면 문제가 생기나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국정교과서로 가든지 교육자료로 가든지 그 문제는 다 동일하게 있는 문제고요.

○**장동혁 위원** 그러니까요.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가장 큰 문제는, 어떤 식으로 가든 저는 상관없는데 교육부가 이걸 교과서로 하면 너무 무겁고 뭔가 이걸 수시로 바꾸고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AI 교과서의 성격상 저는 그건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 방향성에 대해서 결국은 학부모님들의 우려는 분명해요. 그런데 저는 그건 어떻게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봐요.

○**위원장 이춘석**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 차관님, 임명을 축하드립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 이전에 교육부의 고등교육정책실장으로 재직하셨습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박은정 위원** 그 당시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 대기 발령되었다가 명예퇴직하신 것도 맞나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 위원** 이번에 국민주권정부 초대 차관으로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AI 디지털교과서는 윤석열 교육부가 정책 당사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개정안은 윤석열 정책 실패를 되돌리기 위한 개혁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차관님?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박은정 위원** 태블릿 같은 전자기기 보급 등 현장에서는 이미 디지털교과서의 강행으로 대혼란에 이르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반대하는 이유도 그거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맞습니다.

○**박은정 위원** 작년 12월 여론조사만 봐도 학부모와 교원 87%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반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박은정 위원** 그래서 이것이 윤석열 정부가 정책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정책이라는 말씀입니다. 초등학교 만 5세 입학 연령 하향이라든가 막무가내식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윤석열표 교육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태효 차장, 박철희 국립외교원장 같은 뉴라이트가 교육부 산하기관에도 대거 포진해 있습니다. 정책 실패뿐만 아니라 뉴라이트 인사 참사도 국민 눈높이에서 잘 감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고개를 끄덕임)

○**박은정 위원** 디지털교과서는 이주호 현 교육부장관의 대표적인 정책이었는데 신임 교육부장관 지명 전까지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정부의 교육정책을 차관님께서 꼼꼼하게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알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석** 다음은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 차관님, 임명 축하드립니다.

사실 제가 오늘도 아침에 관내 학교를 가서, 작년부터 가는 곳마다 이 문제를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이념이나 정치와 관련 있는 문제입니까? 차관님 어떻게 보세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동욱 위원** 예.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게 이 부분은 기술의 발전이라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고, 특히 교육 현장에서 제가 학부모님들 따로, 교사분들 따로—사실은 제가 교육위는 아니지만—다 물어보면 두 가지 방향성이 보이더라고요. 교사분들은 대개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이유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님들이 찬성을 하시다가 최근에 반대로 많이 돌아서신 것 같아요, 느낌이. 그리고 저희 지역구는 비교적 교육 혜택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서울 도심의 한

가운데 강남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 아이들이 디지털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데 역설적으로 반대하시는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바로 디지털 과몰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그러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분들은 오히려 이런 기기가 도입되는 것이 본인의 자녀들에게 불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지방에 학원도 주변에 잘 없고 이런 데 있는 학생 학부모들은 이런 디지털기기의 발달로 우리 아이들이 학원을 가지 않더라도 좋은 교육, 특히 제가 최근에 들어 보면 영어나 이런 쪽에서는 탁월한 학습효과가 있다고 들었는데, 오히려 지방이라든지 교육에서 소외된 지역에 있는 학부모들은 이게 더 적극적으로 활용되기를 원하는데 제가 살고 있는 서초구 학부모님들은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 핸드폰 보는 것도 지켜워 죽겠는데 웬 디지털교과서냐 이런 반응을 그냥 하시는데……

저는 교육이라는 게 어쨌든 백년대계고 가는 방향성에 관한 문제라면 교육부에서 너무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보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방향이 맞으면 어떤 방식으로든 방향을 찾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과서로 하느냐, 교육자료로 하느냐는 저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교육자료로 했을 경우에는 경제 수준에 따라서 교육의 양극화가 훨씬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과연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주호 장관이 추진했기 때문에 안 된다라든지 또는 교육자료는 되는데 교과서는 안 된다라든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교육부에서 어쨌든 정권이 바뀌어서 재검토하는 것이라면 경과규정을 두는 것이든 이런 마이너한 문제 말고도……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걸 안 할 것인가? AI 교과서가 전 세계적으로 기술의 발전으로 이 안에 모든 지식정보가 집약돼 가고 있고 또 디지털 과몰입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아이들은 이미 디지털 과몰입돼 있습니다. 저희 아이도 일체 종이로 된 것 안 봅니다. 교육자료도 전부 태블릿에 다 넣어서 그냥 보지. 이미 디지털 과몰입이 돼 있는 상태인데 디지털 과몰입이 돼 있어서 안 된다, 문해력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논리가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맞는 논리인지 차관님 소신 좀 들어 보고 싶습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학부모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고요. 종이로 된 건 안 보고 문해력이 떨어지고 과몰입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디지털기기가 계속적으로 발전할 텐데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어떤 정책적인 강화를 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검정교과서로 하느냐 교육자료로 하느냐 이것을 정치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AI 시대를 앞서서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인재를 키울 때 어떤 자료가 어떤 법적 지위를 가지고 하느냐 그것이 저희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신동욱 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아까 장동혁 위원님 문의하시는 것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검정교과서로 가는 것은 시대 상황에 따라서 자료의 내용이 바뀌는 것이, 기본적으로 교과서는 서책을 중심으로 해서 그 내용을……

○**신동욱 위원** 그러니까 이게 디지털로 가면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더 쉽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아, 그것은……

○**신동욱 위원** 논리가 안 맞잖아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아니, 디지털로 가서 훨씬 더…… 아, 내용을 바꾸는 것을요?

○**신동욱 위원** 내용을 바꾸고 보완하고 매년매년 보충해 나가는 것이 훨씬 쉽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것 활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그런데 교과서라는 지위를 가지면 검인정 체제 자체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냥 교육자료로 쓰는 것보다는 무거운 체제인 것은 맞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치적으로 판단하셔서 ‘이 것 안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기술의 발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 이 부분을 교육자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춘석** 박지원 위원님이 먼저 신청하셔서 박지원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위원** 제가 누군지 아세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입니다.

○**박지원 위원** 제가 그 유명한 박지원입니다.

차관님, 축하드리고요.

교육부에 몇 년 근무하셨어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1991년부터 근무했습니다.

○**박지원 위원** 오랫동안 근무하셔서 차관 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AI 교과서, 교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꾸 정치적 논쟁으로 보는데 그건 차관님도 교육부에서도 배제하고 보시는 거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그렇습니다.

○**박지원 위원** 고개만 끄덕거리면 속기록에 안 나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그렇습니다.

○**박지원 위원** 지금 새 정부 와서 의대생들이 복귀한다고 그립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무조건 아무런 과학적 근거 없이 2000명 증원한다고 해 가지고 몇 년간 사달을 벌였는데 의대생 복귀는 순조롭습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지금 복귀 의사를 밝혔고요. 저희가 어떻게 학교랑 아무런 무리 없이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계세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짜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전공의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전공의 문제는 복지부에서……

○**박지원 위원** 물론 복지부지만 함께 볼 것 아니에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그렇습니다.

○**박지원 위원** 잘되기를 바라고요. 이것 잘못하면 큰일납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전남에 의과대학 설립을 하는 것은 오랫동안 숙원입니다. 그리고 16개 광역단체에—세종시 빼고—의과대학이 없는 곳은 유일하게 전남인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플랜은 어떻게 돼 있어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말씀하신 현 상황은 저도 잘 인지를 하고 있고요. 어느 지역에 살든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데 전남 지역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 지역에 의대를 만들든지 그런 걸 하려면 일단은 의대 정원이 늘어야 되는데 그것은 추계위원회를 복지부에서 구성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부와도 잘 협의해서 전남 지역의 의료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물론 의대생이나 간호학과나 모든 그러한 것은 복지부에서 티오를 산정하지만 제가 윤석열 정부 때 전국의사협회 회장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단 한 명도 증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은, 전남의 의과대학 설립은 아직 검토가 안 되고 있습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박지원 위원** 필요성은 수십 년 전부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결도 이재명 정부에서 할 계획입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그런 해결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추계위원회를 만들어서, 추계 기구를 만들어서 논의를 시작했고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한번 기대를 하겠습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박지원 위원** 윤석열 정부 때 교육발전특구 지정하는 문제 잘 알고 계시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박지원 위원** 전 부총리, 전 교육부장관이 추진하다가 아무래도 새로운 장관이 오셔서 결재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보류된 지역들이 많이 있는 것 알고 계세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러면 교육부장관이 오시려면 상당한 기간인데 차관이 그걸 처리할 생각 없어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그것은 정책을 크게 바꾸는 그런 것이 아니면 저희가……

○**박지원 위원** 전체를 크게 바꾸는 게 아니고 다 틀이 정해져 있고 이미 심사를 해서 결정 나 있어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실무 부서와 협의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이나 교육발전특구 지정에 대해서 차관이 다음에

또 법사위에 나오면 이 유명한 박지원이 또 물어요. 준비하고 나오세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알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거듭 축하합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춘석** 조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배숙 위원** 차관님, 저는 조배숙 위원입니다.

다시 축하드립니다.

지금 AI 교과서 있잖아요, 교과서로 됐을 때하고 교육자료로 되었을 때하고 그 차이가 뭐지요, 학생들이 부담해야 될 것은?

○**교육부차관 최은옥** 학생들이 부담해야 될 차이요?

○**조배숙 위원** 예.

○**교육부차관 최은옥** 아무래도……

○**조배숙 위원** 교과서는 무상 아닙니까, 교과서로 됐을 때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조배숙 위원** 그러면 교육자료로 됐을 때는?

○**교육부차관 최은옥** 교과서는 국가에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자료고요, 교육자료로 됐을 때는 사용료나 구독료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AI 교육자료를 학생들의 가정환경에 차별 없이 제공……

○**조배숙 위원** 어쨌든 무상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그것은 저희가 정책을 어떻게 구현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런데 교과서는 무상이 확실하지만 교육자료의 경우는 아직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러면 만약에 학생이나 학부모 부담이 됐을 경우에 잘못하면, 디지털 AI에 관련해서 다 평등하게 잘 교육을 받아야 되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교육 불평등이 심화될 거라고 생각 안 하세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저희는 정책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공공의 교육 서비스를 포함해서 그런 서비스가 잘……

○**조배숙 위원** 그러면 교육자료로 했을 때도 국가가 부담을 해 주겠다는 겁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모든 교육자료를 부담해 주겠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릴 수는 없는데요.

○**조배숙 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 점입니다. 어쨌든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교과서로 하느냐, 교육자료로 하느냐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AI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가 있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조배숙 위원** 그러면 만약에 법이 이렇게 바뀐다고 하면 사용하고 있는 학교는 언제 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부칙 개정 없이 되면 교육자료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지요.

○**조배숙 위원** 그러니까 교과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교과서로 사용할 수

있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법이 시행되는 날까지가 교과서인 겁니다.

○**조배숙 위원** 법이 시행되는 날. 그러니까 부칙에 보면 대개 언제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잖아요, 공포한 날로부터 언제. 그러니까 기약이 없네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저희가 부칙에 의견 낸 것을 제외하고는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러면 혹시 이런 제안은 안 해 보셨어요? 일부는 지금 교과서로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보고 이것을 교과서로 할지 아니면 교육자료로 할지, 일단은 이미 시행이 됐으니까 일부라도 그것을 좀 보고서 평가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 같은 것은 전혀 안 해 보셨나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저희가 상임위에서 논의할 때 그런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조배숙 위원** 저는 이걸 보면서 교육부가 정치와 이념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교육위원회가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면 교육이라는 것은 국가 백년지대계다, 그래서 큰 틀을 만들어서 정권이 어떻게 바뀌든 그대로 가겠다는 그런 취지로 교육위원회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조배숙 위원** 그런데 저는 AI 교과서 하나를 놓고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 자체의 뚜렷한 의견이 없이 이렇게 흔들리는 것을 보고 교육부가 정치나 이념에 너무 흔들리고 있다 이런 생각을하게 됩니다.

아무튼 저희들로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염려하는 것은 지금 AI 시대이고 정말 어제의 신기술이 오늘의 휴지 조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미래세대가 이 부분을 잘 교육받아야 그 세대가 크면서 우리나라가 경쟁력 있는 나라가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로서는 AI 교과서로 그대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석** 김용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위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이 체계·자구 심사의 범위는 한참 벗어난 것 같고 정책에 대한 당부를 논의하는데 이미 교육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오셨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김용민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은 법사위에서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칙과 관련해서 경과규정이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건 본회의에서도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필요하면 교육위랑 상의해서 본회의에서 수정하는 방식도 고려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 때문에 이렇게 법사위에서 잡고 있을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왕에 문제 제기를 하셨으니까 한두 가지 좀 짚어 보고 싶은데요.

이게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갑자기 정책이 바뀌거나 한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아무런

검증 없이 윤석열 정부에서 그냥 밀어붙였던 것 아닙니까? 이런 정책에 대해서 사전 연구용역도 안 했고 검증절차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당장 해’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장에서 교사들도 제대로 연수도 못 받았는데 당장 AI 디지털교과서를 쓰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올 초에 교육 현장이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김용민 위원 그걸 이제 바로잡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무슨 정치적인 논란이 있습니까. 정치적인 논란을 굳이 얘기하자면 윤석열 정권에서 무식하게 밀어붙였고 당시 교육부가 책임감 없이 거기에 부화뇌동했던 것이지요. 이제 제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보니까 과거에도 문해력이 떨어진다라는 이 논란 때문에 스웨덴 같은 경우에도 AI 교과서 도입했다 7년 만에 다 폐지했던 것 알고 계십니까? 전면 다 취소했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김용민 위원 지금 검증이 안 됐습니다. AI 교과서를 안 쓰니까 우리 아이들이 AI 기술에 익숙하지 않을 거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다른 얘기잖아요. 다른 영역의 얘기인 것이잖아요. AI 교과서로 안 배운, 미국의 엔비디아나 이런 각종 회사들이 AI 교과서로 안 배웠는데 어떻게 AI 기술을 그렇게 발전시킵니까? 같은 논리로 같은 맥락이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AI 기술을 충분히 활용해서 나중에 익숙해져서 AI 기술 더 발전시킬 수 있다, 뭐 어느 정도 인과관계나 연관성은 있겠지요. 하지만 AI 교과서가 필수적이다라는 것은 꼭 성립하지 않는 것 같은데 거기에 어떤 연구 결과가 있습니까? 검증 결과가 있습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용민 위원 그리고 보니까 이미 현장에서도 초중고 교원의 한 73% 정도가 AIDT 도입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조사가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많이 크지요? 그러니까 학부모들도 마찬가지지만 가르치시는 교사들의 반대 목소리가 크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초기보다는 조금 줄어들었다고는 봅니다만 그래도 반대 목소리가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하여튼 저는 이게 바로잡아 가는, 정상화시키는 과정이다라고 보고, 정책의 당부에 대해서는 우리 법사위에서 논의할 게 아니라 이미 교육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해서 온 것이니 저희는 체계·자구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그냥 여기서 본회의로 넘기고 경과규정은 본회의에서 필요하면 논의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석 박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승 위원 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 박희승입니다.

차관님,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이야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박지원 위원님 의대 설립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 지역에 2018년부터 서남대가 폐교되고 의대가 없어졌지요. 그래서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안이 계속 국회에 발의가 됐는데 통과가 되지 못했어요. 그때 당시에 아마 민주당에서 예산까지 책정을 해서 땅도 일부 구입했고 그런데 결국은 법안 통과가 무산됐고 21대 때에는 보건복지위 통과가 됐는데 법사위에서 법사위원장께서 상정을 안 해서 또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22대에 들어와서 다시 작년에 대표발의를 했는데 어쨌든 지금 의료가 필요한, 대학병원이 없는 곳이 전국적으로 몇 군데 있습니다만 저희 남원 같은 경우는 서남대 폐교 티오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교육부차관 최은옥** 알고 있습니다.

○**박희승 위원** 그 티오가 지금 원광대, 전북대 49명이 분산돼 있는데 그래서 의사나 전공의들 의대 중원에 대한 반대가 심하지만 남원의 공공의대는 이미 살아 있는 티오가 있기 때문에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대통령 공약으로도 들어갔고 이번에 보건복지부장관 되시는 분도 아마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교육부 쪽에서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다른 지역도 순차적으로 해야 되지만 우선 갈등이 적은 이 지역, 남원에 공공의대 먼저 하는 게 어떤가, 의견이 어떻습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적극적으로 잘 살펴보겠습니다.

○**박희승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지금 우리가 지역의료·필수의료가 많이 부족하고 더구나 군의관 지원 요원들이 굉장히 감소했다고 그래요. 요즘은 군 복무 기간이 짧아지다 보니까 군의관 지원자가 많이 줄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면 단위 공중보건의조차도 확보가 안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의료시설이 필요한, 응급의료가 필요한 지역이 여러 군데 있지만 우선 부지도 확보되어 있고 의사 티오가 살아 있는 이런 곳은 먼저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교육부차관 최은옥** 예, 적극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박희승 위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지금 필수의료 지역으로 의사 부족한 데 우선적으로라도 빨리 설립을 해서 국가에서 먼저 의사들을 양성해야 되겠고.

일본도 사실은 지금 이런 공공의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공공의대를 졸업하면 의무복무를 9년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9년의 의무복무기간이 끝나고도 대도시로 나가지 않고 지역에 정착해서 계속 의사로서 봉사하는 그런 비율이 굉장히 높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공한 정책이지요. 그래서 우리도 공공의대를 빨리 신설해서 진행해서 어쨌든 의료 사각지대인 지역의료·필수의료를 빨리 확보하는 그런 정책을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박지원 위원님하고 절대 대립하는 것 아닙니다. 이쪽도 천천히 해 주시되 일단 논쟁이 적은 부분부터 먼저 해 주시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옥** 잘 알겠습니다.

○**박희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석**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및 제7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부터 6항까지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은 대체토론 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부칙 1조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들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서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5인 중 찬성 10인, 반대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은우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교육부차관 최은우 예, 감사합니다.

---

9.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01)

10.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76)

11.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56)

1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30)

1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24)

14.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48)

15.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16.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17.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회 제출)**

**18.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행정안전위원회 제출)**

**19.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회 제출)**

(14시50분)

○**위원장 이춘석**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19항까지의 행안위 소관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김성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9항까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무원연금 급여 수급권자에게 확정된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 수급권자의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암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9조제1항의 취지는 연금인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암류를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나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와 안 제39조제1항이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어 취지와 다르게 전액 암류가 가능한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민사집행법의 적용 여부를 명확히 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운전면허증 갱신 수료를 분산하기 위해 현행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부여하고 있는 갱신기간을 생일 전후 6개월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안 부칙 1조는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정하고 있는데 국민의 인식 및 행정의 연속성 측면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2026년 1월 1일로 수정하는 의견을 마련하였으며, 안 부칙 제2조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관한 경과조치는 운전면허증을 여러 차례 갱신하도록 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 제82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갱신기간과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갱신기간 중 어느 하나가 적용된다는 점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 의사일정 제17항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마을주민이 주도하여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체를 마을기업으로 정의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마을기업의 설립·운영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안 제2조제2호의 마을주민의 정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가 아니라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마을기업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의 근거를 신설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마을기업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요건을 보다 구체화하는 등의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 자율방범연합회는 시도별로, 시·군·

구자율방범연합회는 시군구별로 1개 조직으로 제한하되 경찰서가 2개 이상인 시군구 등의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조직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조치로 기존에 설립된 시·도자율방법연합회 및 시·군·구자율방법연합대의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부칙에 이에 대한 조정이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확히 하는 경과조치를 신설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춘석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유재성 경찰청장직무대행, 허석곤 소방청장,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윤호중 장관님, 최동석 처장님 임명 축하드립니다.

먼저 윤호중 장관님부터 두 분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장님과 여러 법사위원님들을 이렇게 뵙고 인사말씀 드리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기후위기에 따른 미증유의 재난 속에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재난을 잘 이겨내고 민생회복과 지역균형발전 등 우리 지방의 발전을 위해서도 행정안전부장관으로서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AI 민주정부로의 전환을 서둘러서 유능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드는 데도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여야 법사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춘석 다음은 최동석 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어제부로 인사혁신처장으로 임용된 최동석입니다.

인사조직론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평소에 한국 행정문화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는지 저보고 인사혁신처를 맡아서 일해 보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제 제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공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 많은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축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행정을 민주화한다는 것인데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 처에 있는 여러 간부들과 직원들과 의논해서 행정 민주화를 통해서 국민주권정부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춘석 윤호중 장관님은 법사위원장을 예전에 역임하신 바가 있습니다. 친정과 같으시니까 우리 법사 위원님들의 지역구도 잘 챙겨 주실 것을 윤호중 장관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서 대체토론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지원 위원 지역구 잘 챙긴다니까 그냥 하지요, 뭐.

○위원장 이춘석 조배숙 위원님, 지역구 없으신 조배숙 위원님만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요.

(웃음소리)

○조배숙 위원 그래도 저도 지역구가 있습니다. 전북도당위원장입니다.

우선 장관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감사합니다.

○조배숙 위원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이게 제정법이거든요. 검토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이 법안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마을기업이라고 하는데 마을기업이라는 정의가 조금 모호하고요. 그다음에 그 이전에 협동조합하고요 사회적기업하고 사회경제적기업은 한 20여 년 전부터 지역의 출산율이 저조하고 인구가 감소하니까 지역, 특히 농촌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역점을 두었던 사업들이거든요. 저도 조금 지켜봤는데 이 사회경제적기업 그리고 협동조합 이게 성과가 별로 안 좋았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했는데 극히 일부는 성공한 사례도 있어요. 그런데 극히 일부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데 지금 다시 또 마을기업을 육성한다고 하는 것이 저는 옥상옥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법안 자체도 좀 문제가 되는 것이 마을기업협회 설립 요건이나 회원 요건, 내부 통제장치 같은 이런 규정이 다수가 누락이 됐고요. 이게 보니까 결국 지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누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국가, 지자체가 지원을 해 줘야 돼요. 그런데 굉장히 광범위하게 지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만 처벌되고 지원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잘못 운영했을 때 거기에 대한 제재나 부실 운영 환수에 대한 규정도 전혀 없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비슷한 목적으로 사회경제적기업 그리고 협동조합 시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있은 다음에 마을기업 지원에 대한 이 법이 논의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님께서 잘 살펴보시고 질문을 해 주셨을 텐데요. 그러나 다른 여타의 중소기업이라든가 또는 스타트업 기업, 벤처기업들에 비해서 협동조합 그리고 사회적기업, 그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리는 마을기업의, 특히 마을기업의 생존율은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 이런 다른 종류의 조합법인들 형태의 기업들보다 훨씬 생존율이 높게 조사가 되어 왔고요. 이것은 이미 여야를 떠나서 마을기업이라는……

○조배숙 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생존율이 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마을기업은 한 88%에 달합니다.

○조배숙 위원 우선은 지금 현재 얘기하는 마을기업의 근거가 뭐니까? 조례입니까? 그러니까 마을기업이……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마을기업은 조례가 아니고요. 이명박 정부 때부터 행정안전부의 정책으로 마을기업 육성 정책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조배숙 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근거는 없고?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법적인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지속이 잘 안 되고 있어서 그 근거법을 지금 만드는 것입니다.

○조배숙 위원 그러면 아까 생존율 통계를 말씀하셨는데요. 한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5년간 생존한 비율이 88%에 달합니다. 보통 국내 창업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 34% 정도에 불과한데 오히려 마을 살리기 또 마을 만들기 이런 데 있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를 내 왔다 이렇게 평가를 받아 왔기 때문에 그 근거법을 만들어서 좀 더 지속적으로 정책이 유지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법 제정을하게 된 것입니다.

○조배숙 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취지는 장관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 내부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저희들이 2소위에 회부를 해서 이런 법체계상에, 다른 법률과의 비교도 하고 이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지금 협동조합 기본법에 비해서 크게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석 과규택 위원님 아까 질의하시겠다고 그러셨습니까?

○과규택 위원 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관님, 축하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감사합니다.

○과규택 위원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민주당 의원님들도 여러 분이 내셨고 국민의힘에서도 여러 분이 내셔 가지고 정파적인 입장에서 여쭤보는 건 아니고요. 이게 법적으로 본다면 지금 마을기업의 정의는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마을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약간 도시를 배제한 그런 의미를 가진 마을인가요, 아니면 그런 것 상관없이 한 지역만 기반으로 하면 되는 의미의 마을인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지금의 마을은 시군구 단위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안에서 어떤 형태의 마을을, 그러니까 지역을 기반으로 기업활동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마을기업의 주체들이 선택할 문제……

○과규택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민주당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을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도시지역에 베이커리, 제과점 이런 소상공인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한 지역에 어떤 단체가 거기에다가 팔빙수하고 커피를 만드는 가게를 하겠다 해 가지고 지자체의 지원을 받고 거기서 싸게 해 버리면 소상공인들이 당장 불만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수박을 팔고 있는데 어떤 한 마을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소비자 단체 등 그 지역에 둔 어떤 단체가 여름에 수박 싸게 팔 테니까 지자체에서 지원해 달라 이래 가지고 하면 이 지역의 시장이나 소상공인분들의 불만을 굉장히 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법률로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하겠다 하는 것에는 조금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마을기업 지정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자치단체장의 재량에 관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광역시 지역보다는 오히려 더 지방에 있는 마을 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이를테면 인구감소지역이라든가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이런 지역들을 더 활력 있게 키워 나가는 데 이 제도를 활용하겠다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마을이라는 개념을 법에서 조금 더 규정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소득 기준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인구수 기준으로 한다든지…… 이게 다른 경쟁 관계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잘 없어 가지고 지역 주민들도 불편하고 가게들이 필요한 그런 지역에 이것을 지원해 가지고 영업을 하는 거면 몰라도 기존에 소상공인들이나 시장이나 가게에서 버젓이 자기 돈 들여 가지고 영업을 하는데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는 어떤 관변단체 같은 데서 이런 영업을 하기 시작하면요 지자체장들이 굉장히 비난받을 수도 있고 지자체장 입장에서는 그런 마을기업을 또 지원 안 해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요건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마을기업이라는 것을 폭넓게 인정해 가지고 지역 소상공인들과 마찰이 생길 수 있는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조금 우려가 됩니다. 한번 잘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행령에서라도 제한을 한다든지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려가 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지금 곽규택 위원님이 주신 말씀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해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규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석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 예.

○위원장 이춘석 저는 시간의 균형성을 좀 갖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법사위에서 계속하는데요. 항상 말씀하시는 분은 항상 다 말씀하시고 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말씀하지 않으시는 분은 계속 말씀을 안 하셔서 사실은 어디까지를 제가 허용하고 이런 걸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대부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타 상위법의, 특히 우리 고유법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토론해도 상관없지만 타 상위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저희에게 부여된 체계·자구 범위 내에 있고 정책적 제안도 물론 할 수는 있지만 모든 내용이다 타 상임위에서 논의돼서 아무런 쟁점도 없이 올라온 법안을 여기서 다시 다 재논의하는 과정이 과연 효율적이겠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합니다. 그래서 발언하실 기회를 충분히 드리겠지만 사실은 좀 효율적으로 시간이 사용됐으면 좋겠다 하는 위원장으로서의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의사진행발언이요?

○장경태 위원 짧게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장경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태 위원 위원장님, 저희가 상임위 질의 과정에서 15분의 질의가 있고, 7·5·3이든 5·5·5든 3분을 쪼개서 쓰시든 본인의 질의시간 15분 이내에서 타 상위법이든 본 위원회의 법이든 질의시간의 한도는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저도 저희 고유법안 관련된 질의가 많이 있는데 질의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타 상임위에 안 하는 거지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장께서 두 분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타 상위법에 질의시간을 쓰신 분들은 고유법안 심사할 때 다시 리셋돼서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석 장경태 위원님이 제안하신 안은 아마 시간총량제를 도입하면 어떠냐 하는 뜻으로 받아들였는데 이 부분은 양당 간사와 심도 있게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곽규택 위원 아니, 여야가 바뀌었다고 무슨 말도 제대로 못 하게 합니까?

○신동욱 위원 시간총량제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국회에?

○위원장 이춘석 아니, 제가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논의를 해 보겠다는 겁니다.

○박지원 위원 의사진행발언. 아니, 국회의원이 질문을 할 수 있는 건 질문을 하는 거지, 뭘 위원장이 그렇게 시간을 제한하려고 그래요?

○위원장 이춘석 의사진행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전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희 위원 행안부장관님, 축하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감사합니다.

○전현희 위원 그리고 민생회복과 경쟁 개혁이라는 시대적 화두, 가장 적임자다 생각을 하고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 넣고 민생경제를 회복할 마중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민의힘 쪽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두고 이재명 정부가 소득세 과세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국민의힘 박수영…… 정책위의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장관님,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과세를 검토한 바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고 알고 있고요. 행안부뿐만 아니라 세제를 다루고 있는 기획재정부에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전현희 위원 전혀 검토한 바가 없지요?

그리고 또 부산 출신 국회의원인 박수영 의원이 ‘부산시민에게는 소비쿠폰이 필요가 없다’ 이런 발언도 했고요.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소비쿠폰 정책이 하책 중의 하책이다’ 이렇게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모두 근거 없는 편하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소비쿠폰을 거부하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한 곳도 없습니다.

○전현희 위원 그러면 부산 같은 경우에 국회의원이 이 소비쿠폰 전체를 거부하게 할 수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국회의원께서는 의견은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보고요.

○**전현희 위원** 그런 권한 자체가 없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어제 첫날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의 5분의 1이 신청 대상이었는데 하루 사이에 13.9%의 국민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자의 78%가 신청을 하셨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 69%입니다.

○**전현희 위원**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민생이 어렵고 또 그동안 소비쿠폰을 많이 바라고 있었다 이런 증거다 생각을 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렇습니다.

○**전현희 위원** 오늘 통과시키는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법률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기준의 재량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을 하는 그런 안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법에 의하면 서울시장의 경우에 당연히 앞으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행정·재정적 지원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장이 이 정책에 대해서 하책 중의 하책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서울시가 소비쿠폰 정책에 대해서 협조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소비쿠폰 정책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별로 아직 3차 추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지자체의 예산이 아직 확보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예산을 전액 우선 지원을 하고, 1차 지원분은 국가예산으로 전액 지원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지원은 차등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차등 지원분에 대해서는 지방의 예산을 추경을 통해서 확보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서울시도 그 절차에 따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현희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법에 의하면, 오늘 개정하는 법률은 무조건 지자체장이 이런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뿐만 아니라 서울의 경우에도 당연히 그런 정책에 협조해야 되는 의무사항이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사실상 지금 국민의힘 쪽 정치인들이 이런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펌하 발언을 하는 것은 내란으로 민생경제를 파탄시킨 책임 있는 정치집단이 반성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입장에서 이런 정책에 협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유언비어를 퍼뜨리거나 정쟁으로 삼아서 국민들에게 오히려 피눈물 나게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이 흔들림 없이 잘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소비쿠폰을 악용한 스미싱 우려가 있습니다. 소비쿠폰을 신청하는 그런 링크에 악성코드를 심어서 해킹이나 이런 여러 가지 휴대전화 해킹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스미싱에 대한 대책 잘 세우고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국민들께 여러 차례 홍보를 통해서 스미싱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려 드리고 있고 그런 데에 반드시 유의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충분한 홍보와 안내를 통해서 스미싱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현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춘석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 장관님, 축하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감사합니다.

○신동욱 위원 그리고 질문은 인사혁신처장님께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처장님 소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인사 기준에 대한 말씀을 인터뷰 과정에서 여러 개 하신 것이 있어서……

처장님 평소 소신에 비추어 봤을 때 지금 강선우 후보자님은 각료로서 적합한 인사입니다, 어떻습니까?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신동욱 위원 강선우 후보자님의 갑질 의혹 이런 것 전혀 못 들어 보셨습니까?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제가 요즘 취임과 관련돼서 청문회를 하는 것을 전혀 못 들었습니다.

○신동욱 위원 더구나 청문회뿐만 아니라 기사도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이진숙 교육부장관후보자님이 지명 철회된 것은 아시지요?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그것은 그냥 들었습니다.

○신동욱 위원 이진숙 장관후보자님하고 강선우 후보자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전혀 생각이 없으십니까?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예, 청문회를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동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처장님 말씀 중에 위장전입, 병역기피, 불법 재산증식, 탈세, 연구부정행위, 음주운전 이것은 고위공직자들한테 아무 문제없는 기준입니까?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제가 공직자가 되기 전에 어떤 방송에서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신동욱 위원 아무 문제 없다고 말씀을 하신 건가요?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아니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한 것은 처벌받았으면 그것을 가지고 계속……

○신동욱 위원 처장님 말씀을 그대로 옮기면요 문재인 정부의 7대 인사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문재인 정부 장차관들 명단 죽 봐라. 다 문재인 같은 인간들이다. 무능한 인간들이라는 것이고, 일꾼이 몸 튼튼하고 일 잘하면 되지 과거의 이런 것을 가지고 도덕성 시비 붙는 것 진짜 멍청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제가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폄하하고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인사혁신처장의 생각, 심지어는 성범죄, 탈세 이런 것들도 ‘일만 잘하면 되지’라는 표현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앞으로 고위공직자들 검증 같은 것 하실 때 이게 적용이 되는 것인지 정말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 적용됩니까?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아니, 안 되지요.

○신동욱 위원 왜, 일만 잘하면 된다면서요.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아니, 그게 아니라요 성범죄나 탈세 이런 것은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신동욱 위원** 그러면 이 말씀은 왜 하신 겁니까? 문재인 정부 때 이 기준을 명청하게 해 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됐다 이런 말씀을 왜 하신 거예요?

(이춘석 위원장, 김용민 간사와 사회교대)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그때는 공직에 나오기 전의 이야기라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 않는데 몇 가지 제가 가지고 있던……

○**신동욱 위원** 그러면 공직에 나오시고 나서는 생각이 바뀌신 겁니까?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이제 공직에 나온 이상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동욱 위원** 아니, 그런데 공직에 나오시기 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생각하시지 않고 공직에 나오셨으니까 이제 법과 원칙에 따라 생각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그렇지요.

○**신동욱 위원** 저는요 처장님, 그리고 박원순 전 시장님 성 문제 관련해서도 피해자와 가해자가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오래된 얘기라 정확하게, 신문에 난 것은 제가 봤습니다. 우리 직원이……

○**신동욱 위원** 아니요, 본인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사가 다 났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그래서 그것은……

○**신동욱 위원** ‘그 피해자가 꽃뱀 같은 사람이다’ 이런 표현도 쓰셨어요?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그것은 제가 그렇게 썼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하여튼 신문에 났기 때문에 그것을 직원들이 저에게 알려 줘서 제 SNS에다가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러니까 사과의 말씀을 하신 것은 그것은 사실로 인정을 하셨다는 뜻인가요? 기억이 잘 안 나셨는데 직원들이 이런 기사가 났다 그래서 생각을 해 보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한 것이 맞아서 사과하신 겁니까?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얘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동욱 위원** 얘기를 하신 것은 맞다?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그래서 제가 언론에서 제기된 사안과 관련하여 ‘과거 제 글로 상처를 받은 피해자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제 SNS에다가 올렸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은요 사과를 하시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인사혁신처장으로서, 지금 며칠 새 처장님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 것 보면, 도대체 어떤 연유로 인사혁신처장으로 임명되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이 발언만으로 보면 정말 너무너무 부적절한 발언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 다 내리셨다면서요, 과거에 유튜브에서 하신 발언들?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예.

○**신동욱 위원** 다 내렸습니까?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제가 인사조직 강의를 많이 했는데 간혹 불편한 말을 한 것이 있을 수도 있어서 오해를 받을까 봐……

○**신동욱 위원** 혹시 그런 얘기들을 하셔 가지고 인사혁신처장으로 발탁됐다라고 생각하시는 측면이 있습니까?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사권자가 하시는 일이니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동욱 위원** 저는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 인사가 굉장히 걱정스러워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위원장대리 김용민** 마무리해 주십시오.

○**신동욱 위원** 탈세도 괜찮다, 위장전입도 괜찮다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하시게 됐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예, 돌아보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용민** 다양한 질의와 정책 제안은 좋으신데 마치 인사청문회를 진행하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다음 질의하실 때는 좀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저 말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민** 박지원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왜 일방적으로 하지요?

○**위원장대리 김용민** 안 드리겠습니다.

박지원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신동욱 위원** 30초만 할게요.

○**위원장대리 김용민** 안 드리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30초만 할게요. 주세요.

○**위원장대리 김용민** 드리지 않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아니, 왜 오늘 건과 아무 관계 없는 소비쿠폰, 지역사랑상품권 얘기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박지원 위원** 신 위원, 신동욱 위원, 제가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제 발언 후에 하세요, 방해하지 말고.

○**신동욱 위원** 아니,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것, 이것은 곤란하지요.

○**위원장대리 김용민** 신동욱 위원님, 발언 기회 없습니다.

○**곽규택 위원** 아니, 여야한테 똑같이 기준을 적용하셔야지요.

○**신동욱 위원** 여야한테 똑같이 기준을 적용해야지요.

○**박지원 위원** 제가 발언하면 그다음에 하세요.

○**곽규택 위원** 지역 의대 설립하는 이야기는 계속하게 하고.

○**위원장대리 김용민** 제가 정책 제안은 괜찮다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인사청문회를 하십니까?

○**곽규택 위원** 누가 청문회 질의를 해요, 정책과 관련된 것이지. 인사정책인 것이지요.

○**위원장대리 김용민** 그런 질의를 자제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지원 위원** 윤호중 장관, 축하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감사합니다.

○**박지원 위원** 오늘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국회의원 안 하시고 행안부장관 오래하신 분 같아요. 진짜 잘하시네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잘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지원 위원** 지금 폭우로 대통령께서도 국가비상재난지역을 선포해라, 장관께서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보면 국가재난지역을 선포하더라도 언발에 오줌누기예요. 사실 재난지역을 선포했다고 해서 개인 피해는 거의 없고 공공 다리, 길 이런 것만 보수하는데 저는 이러한 기후변화 시대에 국민이 실감할 수 있도록 국가재난지역을 선포하면 포상 또는 보수 이런 것을 좀 과감하게 지원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데 장관은 어떤 생각이에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저도 역시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만 특별재난지역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져 있고 또……

○**박지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도를 고쳐야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 제도의 운영 또 선정 기준, 절차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충분한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은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도……

○**박지원 위원**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에서 윤호중 장관이 가셨으니까 이런 제도는 좀 고쳐 보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건의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아마 윤호중 장관하고 제가 같이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에서 모실 때 그때 굉장히 큰 홍수, 폭풍이 와 가지고 추수기에 벼가 다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께 저희들이 건의한 게 ‘국가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 드립시다’ 해 가지고 피해 경증을 따지지 않고 특히 농어촌지역의 전체를 국가재난지역으로 선포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보상을 해 준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보면 경중에 따라서 있지만 엄청난 피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피해주민들이 그래도 국가가 있으니까, 대통령이 있으니까 우리가 살 수 있다 하는 정도로 국가재난지역도 인색하게 하지 말고 좀 과감하게 선포해 줄 것도 건의드리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기준에 다소 좀 미달하더라도 정부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고 폭넓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일선 마을에 가면요 이장이 있고 주민자치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는 지금 법적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봉사활동 등 여러 가지 활동은 많이 하면서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는데 주민자치회 구성에 대해서 정부에서 법정 기구로 개편시킬 용의 있으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지금은 시범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만 만들어 놓고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법의 근거 규정을 명확하게 해서 주민자치회가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마지막 질문인데요.

지금 제 지역구인 해남·완도·진도에도 해남은 인구가 6만인데 외국인이 거의 1만 명 정도 돼요. 완도는 5만인데 거기도 1만 명, 진도는 3만도 안 되는데 1만여 명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외국인과 외국인노동자, 계절노동자들을 빼면 시골에, 농어촌에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인구 센서스에 포함되지 않아 가지고, 사실 그분들이 경제활동, 즉 생산활동을 함으로써 농어촌은 존재하고 있고 또 그분들이 소비를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가 지탱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가에서는 생활인구다, 상주인구다 이런 것을 따져 가지고 편입을 안 시키는데 인구 센서스에 포함시켜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분들도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즉 지자체에 지방교부금 같은 것이, 교부세 같은 것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한번 개편해 볼 생각 없으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말씀해 주신 대로 계절노동자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도시지역에서 휴가를 간다든가 관광을 가시는 분들까지를 포함해서 생활인구로 파악을 하고 그것을 근거로 재정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 나갈 계획이고요.

아울러서 도시지역에 생활하고 있는 분들의 제2주민등록제 같은 것을 운영해서 농촌지역에 자주 와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박지원 위원** 지금 장관께서 명확하게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약속했습니다. 꼭 조치하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민** 다음은 장동혁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혁 위원** 19항 법률에 대해서 질문을 할 것인데요. 그 전에, 우리가 법사위를 운영하면서 타위법을 할 때 장관들께서 참석하시면 법안에 대한 토론 당연한 거고요, 정책 대안이나 지역의 여러 현안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또 그 외의 사항들에 대해서도 질의를 해 왔었습니다.

저희 법사위원들은 타 부처의 장관님들을 별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타위법 심사하는 그 계제에 여러 질문들도 하고 법안과 딱히 관련이 없더라도 현안에 대한 질의를 했었습니다.

존경하는 신동욱 위원님께서 인사혁신처장님을 상대로 여러 질문을 드렸는데 법안 심사를 하기 위해서 오신 인사혁신처장님으로서는 다소 불편한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공무원의 인사를 담당하는, 인사 검증을 담당할 수 있는 그 지위에 있는 인사

혁신처장이시기 때문에 그동안 인사에 관해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기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어떤 의혹을 가지고 있거나 국민들께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저는 국회 의원으로서는 이 법사위 장에서도 그런 질문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치 않은 질문이었다고 지적된 것에 대해서는 다소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가운데 ‘그것은 공직에 들어오기 전에 한 발언이라서’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인사에 관한 원칙과 소신 그것이 결국은 인사혁신처장으로서 근무하면서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한 것이고요.

공직에 들어오기 전의 것이니까 문제 삼지 말라면 그전에 있었던 공직후보자들의 여러 범죄행위나 비위행위에 대해서 문제 삼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공직에 들어올 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내가 행동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니까 앞으로 공직자로서 잘 생활하겠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과거의 그런 모든 문제들을 문제 삼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이에 대해서 적절치 않은 질문으로서 제지당하신 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행안부장관님께 19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은 자치사무인데요. 지금 이것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다만 지역 여러 사정에 따라서 재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의무규정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기본 자치사무에 대해서 국가에 반드시 재정을 지원하라고 하는 것은 자치사무의 기본 성질에 맞지 않고요.

또 정부로 하여금 지자체 요구에 따라서 예산요구서가 딱 오면 그것 반드시 반영하도록 의무화한다면 정부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런 의무조항 때문에 결국은 정부의 예산편성권은 축소되거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초연금이나 다른 주요 의무지출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하고 있는 지출한도를 굳이 왜 이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하는지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국가가 재정을 지원한다면 뭐 나쁠 거야 없지요. 그러나 그 국가의 재정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재정법의 기본 원칙에 맞아야 되고 그 원칙에 하나씩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예산편성에 있어서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재량규정을 반드시 이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만 의무규정으로 바꿔야 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예산편성권을 제한하게 될 것인데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지출한도에 대해서도 아무런 그런 것 없이 예외를 인정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어쨌든 예산편성의 기본 원칙과는 맞지 않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우선 모든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해야 된다는 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그 규모……

**○장동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자체가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본인들이 발행할 능력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발행할 것인데……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렇지요.

○장동혁 위원 그것에 대해서 국가가 의무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라고 하는 법안이 저는 안 맞다는 겁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러니까 그렇게 결정을 하면 정부에서 조금 더 지원을 해서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마중물 역할을 해 주자라는 그런 취지의 법안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재정 당국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지출한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은 재정 당국 입장을 수용해서 법안에서 빠졌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민 박희승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승 위원 윤호중 장관님, 축하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감사합니다.

○박희승 위원 평소에도 아주 힘들고 묵직하게 국회의원 생활 잘하셨는데 행안부장관으로서도 역할을 잘하실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은 저도 발의를 했고, 그 취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고 가계의 부담도 덜어 주고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도 방지해서 균형발전의 디딤돌 역할까지 하는 일석삼조의 민생정책입니다.

그리기에 이번 추경에서도 한 6000억 원 정도가 통과됐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박희승 위원 개정안의 핵심은 국가·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이재명표’라는 딱지를 붙여 윤석열 정부 들어 가지고 지자체 사무라며 예산 삭감을 많이 했고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줄다리기 끝에 찔끔 증액되는 소모적 경쟁이 계속 반복이 되었습니다. 국가지원 규모 등에서 매번 논쟁이 반복되다 보니까 소상공인이 더 버티기 어려워지고 매번 정치권의 입을 바라봐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민생이 정쟁의 틀 안에 발목 잡히지 않기 위해 반드시 통과가 필요하고 이것은 정권을 떠나서 소상공인, 가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통과가 시급하다 여기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박희승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사업은 지역경제, 특히 골목상권·전통상권의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제도를 통해서 여러 차례 실험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난 코로나 위기 때도 지역사랑상품권의 형태로 방역지원금이 지급된 적도 있고 해서 그 효과가 입증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지속해 나가야 될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박희승 위원 그리고 특히 인구감소지역에 보조금 추가 반영 근거도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번 민생소비쿠폰에서도 비수도권 지역은 좀 더 지급한 거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민생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에 의한 소비쿠폰 지원은 아닙니다만 이 법이 만들어지면 이렇게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희승 위원 지역사랑상품권은 전국에서 사용이 가능한 온누리상품권과는 좀 다른

특징을 갖고 있고 그것이 바로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차단하는 그런 효과가 있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렇습니다.

○박희승 위원 인구 감소 등으로 지역 골목상권의 어려움이 큰 만큼 추가 지원 근거를 법률로써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동의합니다.

아울러서 더 나아가서 지금은 해당 지역 내의 주민들에게만 지역사랑상품권이 발행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인구로 분류될 수 있는 외지에서 해당 지역으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발행이 가능하도록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희승 위원 앞으로도 더 많은 연구·발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박희승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민 수고하셨습니다.

주진우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우 위원 행안부장관님, 축하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감사합니다.

○주진우 위원 저도 지역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원래는 민주당이 야당 시절 때는 사실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을 더 크게 펼치고 싶은데 예산편성권이 없으니까 법으로써 규정하려고 했던 측면이 있는 건데 지금은 여당이 됐잖아요. 사실은 기재부에서도 이것을 지금 우려를 많이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예산을 배정하는 데 있어서 다 법으로 의무화시켜 버리면 나중에 국가에 어떤 위기나 재정적인 상황이 왔을 때 재량을 가지고 쓸 수 있는 돈들의 범위가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도 재량으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산에 편성하고 거기에 따른, 만약에 그게 어떤 재정적인 부담이 돼서 국가재정에 부담이 된다면 거기에 따른 행정적·정치적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법으로 규정하게 되면 이게 계속해서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다음 정부까지도 전부 기속을 하는 데다가 오히려 정부의 재량을 줄임으로써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이게 또 기재부에서 그런 측면 때문에 반대하는 것인데 기재부하고는 완벽한 의견 일치를 이룬 것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기재부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출한도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지 않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진우 위원 인사혁신처장님, 이제 공무원 인사를 사실상 총괄하게 되는 건데요. 지금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뭡니까? 그러니까 어느 기관에서 얼마 정도의 인원이 지금 하고 있지요?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잘 모릅니다.

○주진우 위원 가장 기본적인 업무인데 가장 기본적인 틀은 좀 파악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인사 검증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진우 위원** 지금 예전 발언이 문제 됐던 것은 혁신처장님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인사권자가 코드인사를 마음껏 해도 되고 또 굳이 도덕성 검증에 대해서는 받을 필요가 없다고 아주 극단적인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아까 인사정책적 차원에서 봤을 때 그러면 앞으로도 도덕성 검증 기준을 빼고 하는 것이냐 이걸 물은 것이거든요. 앞으로의 인사혁신처 운영 방향과 관련해서 도덕성 검증 기준은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까?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유효하지요.

○**주진우 위원** 유효해요?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예.

○**주진우 위원** 그러면 아까 강선우 후보자 관련해서도 언뜻 지나갔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 얘기를 오늘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언론보도에 계속해서 나왔고 지금 모든 사람들,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대한민국 공무원 인사를 총괄하시는 분께서 강선우 후보자 관련된 이슈가 뭔지를 모릅니까, 아니면 답변하기 곤란해서 답변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실제로 청문회를 못 봤습니다. 지난 주 내내……

○**주진우 위원** 청문회를 보지 않더라도 지금 보좌진 갑질 논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도가 있었잖아요. 보좌진 갑질 논란이 있는 건 알고 계세요? 그것도 모르세요?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우선 저희 집에 텔레비전도 없고 신문도 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바빠 가지고 그걸 볼……

○**주진우 위원** 인사혁신처장께서 답변 회피하는 것 제가 더 묻지는 않겠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인사를 총괄하시는 분이고 전체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의 업무를 맡아서 공직을 하시는 분인데 집에 TV가 없어서 뉴스를 안 본다? 그러면 사회 현안은 어떻게 알고 적재적소에 인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건 너무 무책임한 말씀이시지요.

기본적으로 지금 사회를 관통하는 어떤 이슈든 그게 여야의 유불리가 어떻든지 간에 주요 각료로서 인사혁신처장으로서는 당연히 인사 관련된 문제는 빼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그래서 못 그랬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민 간사, 이춘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주진우 위원** 인사 검증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논문 표절이라든지 저서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이런 건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교육부장관후보자가 낙마한 것도 논문 표절인데 그 부분이 사실은 인사검증 시스템이 작동을 하면 쉽게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학계 검증단조차도 쉽게 찾아낼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걸러 내지 못한다면 앞으로 인사의 객관성을 어떻게 담보하고 국민들이 어떻게 믿고 맡길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린다면……

○**주진우 위원** 다 말씀해 보세요.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그러니까 도덕성과 관련된 것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인사청문회

에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공개적이 아닌 다른 방식을 쓰는 것이 좋고, 그 사람이 과연 과거에 유능한 실적이 있었느냐, 성과를 냈었느냐 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것이 제 개인적인 견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사혁신처장이 됐으니까……

○**주진우 위원** 논문 표절 이런 것은 도덕성 문제 부분도 있지만 사전적으로 당연히 검증이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그건 왜 걸리지지 못했는지 저도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 소방청장님.

○**소방청장 허석곤** 예, 소방청장입니다.

○**박은정 위원** 오늘 내란 특검에 이영팔 차장님이 소환되어서 조사받고 있지요? 맞습니까?

○**소방청장 허석곤** 예.

○**박은정 위원** 그러면 청장님도 내란 특검의 조사 받으셨습니까?

○**소방청장 허석곤** 아직 받지는 않았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러면 청장님은 검찰 특수본 조사는 받으셨습니까?

○**소방청장 허석곤** 예, 그동안 저는 세 곳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고요. 관련돼서 우리 관련된 직원들도, 많은 직원들이 조사를 다 받았습니다.

○**박은정 위원**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의 내란 관련해서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에서 받아서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맞습니까?

○**소방청장 허석곤** 단전·단수 업무는요 소방 업무가 아닙니다. 아니고 소방에서 그것을 시행할 일도 없고 제가 지시를 한 일도 없습니다.

○**박은정 위원** 지시를 받은 건 맞습니까?

○**소방청장 허석곤** 지시라기보다는 전화는 제가 받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수사기관에서 성실하게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은정 위원** 행안부장관님, 축하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감사합니다.

○**박은정 위원**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보시면 불법 광고물 배포 관련해서 단속하겠다는 규정입니다. 장관님께서 잘 파악하고 계시지 못할 수도 있는데 설명을 좀 드리면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도입하고……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잘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전국 지자체에서 조례 등을 통해 가지고 시행을 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불법 광고물에 대한 폐해가 심각하고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되는 건 맞고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이 매우 유효적절한 방법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광고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헌법상 표현의 자유하고 직접 연관성이 있는 것이어서, 물론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도 거기 포함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광고의 규제와 관련해서 행안부 차원에서 지자체 조례에 시행 기준이라든가 운영, 세부적인 조항 같은 것을 위임하셨는데 그렇다면 표현의 자유하고 직접 연관성이 있는 부분들이 지

자체 차원에서 너무나 심하게 확대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는 조례에 위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행안부 차원에서 이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과 관련해서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기준을 정해 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바로 그런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만 허용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광고물에 대해서 이런 시스템을 통한 경고 전화를 계속 보내는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이미 지자체 한 아흔아홉 곳 정도가 이런 시스템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만든 데도 있고 조례 없이 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법적인 분쟁의 소지가 있었고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이 범위를 엄격히 제한해서 이런 경고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 법을 만들게 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박은정 위원** 법제화한 것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각 지자체에서 조례에 따라서 시행을 할 때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데 있어서 표현의 자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침해되지 않도록 행안부에서 각별히 감독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석** 광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규택 위원** 행안부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광규택 위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이 자치사무인데 자치사무에 대해서 국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사무가 또 있나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제가 거기까지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광규택 위원**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지역사랑상품권이, 소비쿠폰에 대해서 추경을 할 때 지방 도시들, 지역에 있는 군에서는 굉장히 부담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서울이나 수도권은 지자체에서 25%를 부담했었고요 지역에서는 10%를 부담했는데 서울에 있는 구에서도 25% 부담하기가 구의 재정 형편상 도저히 안 된다 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를 했고요. 지역의 경우에 10%라는 것도 재정 부담이 돼서 여력이 없다 하는 지자체들이 많았거든요. 이것은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광주나 전주나 대구나 부산이나 다 비슷비슷한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부산 시내에 있는 구청장들께서 너무 어렵다고 해 가지고 이번에 법안을 하나 발의했어요. 지방재정법 개정안인데 이렇게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지자체에 부담을 주는 경우에는 지자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자 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지자체에서 굉장히 필요하다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도요 왜 자꾸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경기도나 성남시처럼 재정 여력이 좋은 데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많이 발행할수록 이익이 되겠지요. 그런데다가 국가재정까

지 의무적으로 지원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지역에, 지방에 있는 자치단체들은 너무나 돈이 없기 때문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할 여력도 안 되고 그런 곳에는 또 국비 지원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빈익빈 부익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수도권에 있는 재정 여력이 좋은 지자체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법이잖아요.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은요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정말 자괴감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법안이 체계에 안 맞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자치사무에 대해서 국비 지원을 의무화한다는 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답변드려도……

○**곽규택 위원** 제가 대안까지 말씀드릴게요. 잠시 듣고 말씀하시지요.

이 법안 내용 중에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보조금 예산을 추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 내용을 원칙화해서 국가에서 국비 지원을 의무화 할 수 있는 것은 ‘인구감소지역에 한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좀 제한을 두셔야지, 이게 잘사는 지자체는 계속해서 지역상품권을 발행하고 못사는 지자체는 발행도 못 해 봐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제도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의무화한 것이 처음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방재정법상 국가에서 장려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대신 답변을 드리고요.

민생지원 소비쿠폰은 전액을 국비와 지방비 부담으로 지원하는 것이지만 지역사랑상품권은 전액 예산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략 10% 범위 내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 발행을 하게 되는데 그 할인하는 금액과 상품권을 제작하는 비용 정도를 지자체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 부담분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을 해 주자, 일부 지원을 해 주자라는 것입니다. 그 일부 지원액에 대해…… 우선 발행 여부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재량에 모두 맡겨져 있고요. 모든 지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자체는 발행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실제로 보면 충남의 부여군 같은 데는 대단히 재정 여건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 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느 당 소속이냐를 떠나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다는 현실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볼 때 이 법안은 충분히 제도로서 유용한 법안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춘석**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11항 및 13항, 제19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장동혁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몇 항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장동혁 위원** 19항.

○**위원장 이춘석** 그러면 19항을 제외하고 9항, 11항, 13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세 가지 법안에 대해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서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서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4인 중 찬성 9인, 반대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제12항, 14항부터 18항까지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장동혁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이의 있으십니까?

○**장동혁 위원** 17항에 대하여……

○**조배숙 위원** 17항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17항.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12항, 14항, 15항, 16항, 18항까지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서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들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71조에 따라서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5인 중 찬성 10인, 반대 2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호중 장관님, 유재성 차장님, 허석곤 청장님, 최동석 처장님, 김용빈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

20.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20)
21.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22.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15시)56분

○위원장 이춘석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2항까지 농해수위 소관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김성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2항까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시 차별 금지, 표준계약서 사용, 보험 가입, 귀국 조치 등 고용주의 책무를 명시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기준으로 수령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안 제14조의2 각 항에 규정된 수령 주체를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로 일원화하고 안 제14조의2제3항의 대행은 해석에 따라 근로계약의 체결이라는 법률행위를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절차’로 수정하여 행정적 지원의 의미를 명확히 하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보호의무는 근로계약 체결 이후 발생하는 바 개정 조항이 이 법 시행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부터 적용되도록 부칙에 적용례를 명시하는 등의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농어업재해보험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손해평가 결과에 대한 검증제도를 도입하고 보험 가입자의 손해평가인 교체요구권을 신설하며 보험상품 가격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법률안 중 ‘검증조사’라는 표현은 법령체계상 일반화된 용어나 정의된 개념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검증과 조사로 구분하여 손해평가 결과를 검증하기 위한 조사로 명확하게 하고 손해평가 검증 및 교체 요구 제도가 시행 이전의 평가 절차에 소급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으므로 부칙에 적용례를 명시하는 등의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춘석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서 대체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0항 및 제22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미령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아무 말도 안 물어보니까 서운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니요.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16시00분)

○위원장 이춘석 다음으로 국토위 소관 법률안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23항 및 제24항은 국회법 제59조에 따른 숙려기간을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57)

24.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회 제출)

○위원장 이춘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및 제24항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정환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의사일정 제23항 및 24항 국토교통위 소관 2건 법률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은 지난 2020년~2022년 3년간 시행하고 일몰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다시 도입하려는 내용으로 체계·자구 검토 결과 2026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안전운임제를 심의 의결하는 안전운임위원회가 그 이전에 구성할 필요가 있어 시행일을 조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안전운임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안전운임을 미리 공표할 수 있도록 부칙에 특례를 마련하는 등의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에게 중개 대상물을 설명할 경우에 제시하여야 하는 근거자료에는 신탁원부, 건축물대장 등본 등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춘석** 법률안 심사를 위해 강희업 국토교통부2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서 대체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있습니다. 손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이성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윤 위원** 차관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감사합니다.

○**이성윤 위원** 원래 장관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차관님께서 나오셨으니까……

저는 전북 출신이기는 하지만, 올해 4월 2일 날 대광법이 통과된 거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만 적용이 되다가 드디어 이제 한 50만 이상의 도청 소유지가 있는 도시에 대해서도 대광법이 적용되게 됐습니다. 올해 대광법 5차 시행계획이 내년부터 다시 시행되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그렇습니다.

○**이성윤 위원** 지금 지방 각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공청회도 열고 있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그렇습니다.

○**이성윤 위원**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저희가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는 수요조사를 받아서 각 권역별로 설명회도 하고, 그다음에 교통연구원을 통해서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 주신 전주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금년 10월 말부터 시행되다 보니까 그전에, 올해 그 법이 개정돼서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주권은 별도로 국토연구원에 급히 의뢰를 해서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그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다른 권역에 비해서 늦지 않도록 지금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지난번 국토부장관께서도 신신당부했지만 그만큼 전북이 30년 동안 대광법을 적용받지 못해서 교통환경이 열악해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지역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명확합니다. 차관님께서 꼭 관심을 가지시고 이 대광법이 전북도민들의 염원에 맞게 적절히 적용될 수 있도록 꼭 한번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명심하고 이행하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또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관님, 혹시 서울에서 전주 KTX 타고 가 보신 적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최근에 가 본 적은 없습니다.

○**이성윤 위원** 혹시 그러면 예약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그것도 안 해 봤습니다.

○**이성윤 위원** 저도 일주일에 보통 서너 번 전주에서 서울을 왔다 갔다 하는데 정말 전라선, 전주-용산 예약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주시민들도 서울에 계신 분이 전주에 갈 때 그 예약이 너무나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전주역에서 내

릴 때마다 왜 이렇게 전라선은 기차 예약이 어렵냐는 많은 말을 듣는데요.

혹시 전라선 이용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전라선의 이용률은 한 70%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은 못 하는데요.

**○이성윤 위원** 취임하신 지가 얼마 안 돼서 모르시겠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용률이 약 111%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00 좌석 가지고 111명이 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전라선 기차 증편을 해 달라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했는데 KTX 입장은 ‘차량이 부족하다. 또 철도 용량이 부족하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다’ 이런 똑같은 답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라고 감사원에서 지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차관님 들어보셨어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거기까지는 제가 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성윤 위원** 이게 전북이 수도권과 지방으로 해서 소외를 받고 또 호남에서도 소외를 받고, 전북인들이 갖는 소외감이라는 게 삼중 소외를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라선 KTX 타고 다닐 때마다 예약이 어렵고, 더군다나 전주역에서 내릴 때 초라한 전주역을 볼 때마다 전주시민들께서, 전북도민들께서 왜 이렇게 소외를 받고 있느냐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기차를 타고 다닐 때마다 평균 한두 번 정도 얘기를 듣습니다. 왜 이렇게 예약이 어렵냐, 증편이 안 되냐라고 질문을 받는데 차관님께서 생각하기에 전라선이 이렇게 예약이 어려운 이유하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을 건지 국토부의 계획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도, 제가 오늘 여기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해서 나중에 따로 보고를 드릴까 했는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시니까 그런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의 증편 요구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특정 부분을 증차하다 보면 다른 지역에서 빼 와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지금 두 가지 문제점은 있거든요. 위원님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오송-평택의 용량이 적어서 차량을 증편하기가 어렵다는 측면, 또 하나는 차량 수급이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에 오지를 못 하고 2027년에 그간 주문했던 물량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간의 답변이었을 겁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다시 한번 검토를, 위원님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런 여지가 있는지 또 예비 차량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까지 제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검토해서 결과 나오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춘석**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희업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기 전에, 방금 이성윤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지금 당장의 해결책이 없겠지만 저는 KTX와 SRT 운영 주체의 통합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야만 효율적인 철도 운행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도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공약하셨고 국정기획위에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잘 이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식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유법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2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87)

2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09)

(16시09분)

○위원장 이춘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및 26항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게재된 자료로 대체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먼저 정환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25항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5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고동진 의원 대표발의 형법 일부개정안은 기업의 이사 등 경영진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 경영상 판단을 한 경우 업무상배임죄로 처벌하지 않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사 등이 보다 자유롭게 경영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기업의 경영활동의 자유를 확대한다는 입법 취지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관련된 경영판단의 원칙을 우리 형법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회사 경영과 관련하여 성립하는 형법상 업무상배임죄가 사실상 사문화될 수 있다는 견해 등도 충실히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상법 개정을 통해 특별배임죄 조항을 삭제하거나 처벌을 완화할 경우 그에 따라 형법상의 업무상배임죄 조항도 삭제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추가적으로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춘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은정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26항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정 의사일정 제26항 고동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형사상 경영판단의 원칙을 도입하고 상법상 특별배임죄의 구성요건을 ‘회사를 위한 그 임무에 위배된 행위’로 한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경영상 판단의 원칙을 배임에 관한 죄의 판단에 적용하려는 내용은 회사의 발전을 위해 일정한 위험을 감수하며 혁신적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이사의 경영판단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이미 판례상 이 원칙이 어느 정도 적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 시 긍정적 측면이 인정됩니다. 또한 특별배임죄의 구성요건을 회사를 위한 임무 위배로 한정하는 사항은 이사 등의 자유로운 경영상 의사결정을 위한 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배임으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검사가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하기 위해 특별배임죄가 아닌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위원장 이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정성호 법무부장관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정성호 장관님 임명 축하드립니다.

처음으로 우리 법사위에 오셨으니까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부장관 정성호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법무부장관 정성호입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인사를 드리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법무행정의 대원칙을 국민의 인권 보호로 삼고 법무행정의 혁신과 국민적 숙원인 검찰개혁의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도 여러 차례 약속드린 바와 같이 어떠한 현안에 대해서라도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소통하겠습니다. 국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면서 위원님들과 함께 국민을 위한 법무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춘석 이 법안들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먼저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곽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은정 위원 장관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감사합니다.

○ 박은정 위원 오늘 장관님 나오셔 가지고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 날 유신정권의 마지막 공안조작 사건 남민전의 피해자 이영주 여사에 대해서 46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장관님 취임 전의 일인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장님, 서울고법의 재심 판사님 세 분이, 재판부가 이영주 여사에 대해서 그동안의 위법한 수사로 인한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 모두 일어서서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법원의 정의로운 판단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감사합니다.

○**박은정 위원** 법무부장관님, 그런데 이 사건이 서울고법의 판단에 대해서, 고문 수사로 인한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 재심에서 무죄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무죄에 대해서 상고를 했습니다.

이 상고를, 공판을 수행한 검찰청이 어디인지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아직 그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러면 아마 이 사건 상고할 때 대검에 보고가 됐을 텐데요, 대검의 노만석 차장이 이 사건에 대해서 상고 지휘를 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아직 확인 못 했습니다.

○**박은정 위원** 이 사건 상고를 한다는 정부 보고나 장관님 안 계실 때 법무부차관에게 보고가 있었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일단 저는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박은정 위원** 장관님은 취임하기 전이고요, 상고하는 기간 내에 아마 상고를 한 것 같은데요. 법무부차관은 보고를 받았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이 사건은 상고가 되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고요. 이 사건 피해자는 잘못된 판결로 인해서 인생이 무너진 굉장히 국가적인 피해자입니다. 이런 사건에 대해서 새로운 국민주권정부가 되어서 대검 차장과 법무부차관이 모두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상고를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검찰이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단 모든 사건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상소하고 상고하는 게 과거의 관행이었던 것 같은데 이 문제점에 관련해서는 정말 남상소·남상고가 되어 가지고 피해자들에게, 특히 국가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피해자들에게 다시 2차 가해를 하고 또 한편에서는 국가가 소송 수행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들이 추가적으로 더 드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라고 저희들이 주창해서.....

○**박은정 위원** 이런 사건이 굉장히 많을 건데요, 장관님께서 더 각별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박은정 위원** 특히나 이 사건에 대해서 상고가 적절했는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 상고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실 것인지 제대로 결론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이 사건뿐만 아니라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배상 사건에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박은정 위원** 장관님 취임하시고 1호 지시로 직무대리 검사들의 원대복귀를 지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남지원에서 진행하는 성남FC 사건의 직무대리 검사가 그대로 공판에 들어가서 재판부에서 퇴정을 요청하고 실제로 퇴정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남지청에서는 장관님의 지시가 ‘복귀 지시가 아니고 적정성을 검토하라’ 이런 지시였다고 얘기하면서 지시에 반하는 듯한 이런 대응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장관님께서 1호로 지시했는데 원대복귀 지시가 제대로 영이 서지 않는 것 아닙니까,

장관님?

○법무부장관 정성호 정확히는 원대복귀를 지시한 것은 아니었고요. 다만 현재 수사한 검사가 다른 근무지로 이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대리로 파견을 받아 가지고 공판을 유지하는 지금 현재의 상황이 어떤 건지,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를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일단 규정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물론 규정 관련해 가지고서 검찰에서는 다른 해석을 하고 있지만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상황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재판부에서 계속 문제를 삼았던 사건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관님의 지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공판정에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또 공판정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현재 윤석열 정부의 지난 3년 동안 정치적인 사건에 검사들이 공판정에 우르르, 많게는 10명 이상이 나가 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앉아 있어요.

실제로 장관님께서 민생범죄 대응을 지난번 청문회 때 말씀하셨는데요. 민생범죄를 제대로 하고 있는 형사부 검사들은 사건 수사, 재판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기에 전부 다 검사들이 몰려 있어요. 실제로 공판 검사 1명이 민생범죄 사건 공판 수백 건을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 공감하고 있고요 그 문제 해결책을 만들기 위해서 어제 상황 검토를 지시했던 겁니다.

○박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석 다음은 곽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규택 위원 장관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곽규택 위원 저는 반대했었습니다마는 뒤끝은 없으시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더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규택 위원 오늘 지시하셨다는 내용이 정확하게 수사검사가 앞으로 공판에 관여하지 말라 그런 취지의 지시였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현재 어느 정도 규모로 직무대리가 지정되어 가지고 공판을 수행하는지 이런 상황도 좀 파악하고요. 그로 인해서 박은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민생 사건에 대한 수사라든가 또 해당 본인의 지금 근무처의 수사에 다른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전반적인 검토를 하라고 지시했던 겁니다.

○곽규택 위원 한번 검토를 잘해 주시고, 원래 수사검사가 공판까지 담당을 하라 이것은 과거에는 안 그랬습니다.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사법개혁 과정을 거치면서 검찰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 그런 요구를 더 하셨던 것 같아요.

수사하는 검사가 수사만 하고 공판을 책임 안 지니까 아무 사건이나 수사해 가지고 정치적인 수사를 한다, 그러니까 수사한 검사가 책임지고 공판까지 담당하라 이런 주장들을 담아서 원래 수사한 검사가 계속해서 공판까지 그리고 무죄 났을 경우에 책임까지 지는 것으로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리고 사건의 복잡성 등을 따졌을 때 효율성을 본다면

수사한 검사가 공판까지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고요.

지금 특별검사 같은 경우에 당연히 수사한 검사가 공판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정한 사건, 성남FC 사건 경우에 있어서만 유독 수사한 검사가 공판에 관여하지 말라 이렇게 논란이 됐던 거거든요.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저희가 보기에도 증권이라든가 금융 같은 고난도의 수사 관련해서는 수사한 검사들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적일 겁니다.

○곽규택 위원 예, 그렇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다만 저희들이 박은정 위원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다른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민생범죄에 집중돼야 될 검찰의 사건 처리가 다른 일부 사건들 때문에 대규모로 과거에 나가서 직무대리로 공판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곽규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법안에 대해서 지난번 상법 개정안 통과가 되면서 기업 쪽에서 굉장히 회사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책임 규정이 강화되면서 배임죄 이슈가 또 기업들이 우려하는 바가 됐기 때문에 오늘 배임죄에 대한 개정안이 올라왔고 1소위에 회부가 되겠습니다 마는 그런 배경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곽규택 위원 배임죄라고 하는 게, 형법상 배임죄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죄여 가지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 차원에서 아예 형법상의 배임죄를 폐지하고 상법상의 특별배임죄만 두는 방안도 과거에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도 배임죄의 개정 이런 부분을 기업 쪽의 의견을 잘 들으셔 가지고 한번 전향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리고 취임하셨으니까 곧 검찰 인사 단행하시는 겁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지금 어쨌든 대통령실하고 저희하고 또 대검하고 이렇게 긴밀하게 의논을 시작할 생각입니다. 아직 제가 공식적으로 시작은 안 했습니다.

○곽규택 위원 검찰 인사에 있어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곽규택 위원 지금 검찰총장 공석이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곽규택 위원 그러면 누구의 의견을 듣습니까, 검찰 쪽 의견은?

○법무부장관 정성호 지금 현실적으로는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대검 차장하고 의논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곽규택 위원 과거에 항상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 쪽의 인사 의견을 패싱하고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실의 독단적인 인사 이런 게 어느 정권 할 것 없이 문제가 됐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인사에 있어 가지고 검찰 쪽의 의견도 좀 적극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알겠습니다.

○곽규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석 오늘 첫 번째 질의인 장경태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장경태 위원 장관님,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잘해 주시리라 믿고요.

그런데 아직도 법무부가 해야 될 현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자료 요구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서울구치소장의 직접 면담 등에 대해서 몇 번의 시도를 했는지 집행 절차에 대한 시도를 물어봤는데 ‘횟수 과악에 다소 한계가 있다’라고 답변한다든지 변호인의 접견 실시 시간에 대해서, 횟수는 열한 번으로 줬는데 시간에 대해서는…… 이게 개인의 사생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내용에 대해서 과악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접견 시간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요. 법무부에서 아직도 자료제출을 불성실하게 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공개적으로 드리고요.

지금 내란 수괴 윤석열이 법원에 구속적부심 청구하기 전에 10일 구치소에 입소하고 나서 15일까지 모두 11회의 변호인 접견을 실시했습니다. 하루 평균 2.7회, 거의 세 번에 달하는 변호인 접견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변호인 접견을 이렇게 많이 하면서 특검의 강제인치 요청에 대해서는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어요.

이 건은 너무 불공정한 것 아닙니까, 이것 자체가? 왜 특검에 나가지도 않으면서 변호사는 그렇게 만나뵙니까, 하루에 세 번씩이나? 이런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서울구치소장이 특검팀의 강제인치 지휘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와서 설득했는데 안 되니까 ‘직접 와서, 특검 네가 와서 데려가라’ 이런 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법무부장관께서 이런 부분들은 서울구치소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도 있지만 저는 강력하게 제재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대체가 이분들은, 왜 이렇게 법무부는 퇴임하고 좋은 데를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겸사뿐만 아니라 지금 김현우 서울구치소장 로펌행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까, 혹시? 과거의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저희 법사위에 자주 오셨던 분이에요. 이분이라든지 다들 지금 대형 로펌 가셨어요. 유병철 전 교정본부장, 이분도 서울구치소장…… 교정본부장 하셨고요. 김학성 전 교정본부장, 다 대형 로펌 가셨어요.

그래서 사실상 정치인들 수사가 많거나 소위 재벌 등의 수사가 많아서 서울구치소가 너무 알짜 보직이다 이런 평가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정부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경태 위원 15억 원의 뇌물수수 혐의의 감사원 공무원이 있습니다. 혹시 얘기 들으신 적 있습니까?

(패널을 들어 보이며)

지금 이 기사가 났어요. ‘윤 구속 연장 불허 후폭풍, 검찰 압수수색도 막혔다’라고 하면서 검찰과 공수처가 수사 평통게임 하다가 공소시효 만료 앞두고 6월 말에서야 겨우 기소한 사건입니다. 이러면서 이 기사에는 ‘법조계에서는 검찰개혁 부작용의 미리보기 사례라는 지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근무 중에 해외여행을 갔던 감사원 직원이 있었습니다. 고위공무원이 있었는데, 감사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 수사 요청을 했고요 공수처에서 22년 2월부터 수사가 들어가서 특가법상 뇌물과 횡령 혐의의 기소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수사 사건에 대해서 기소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에 기소 요청을 하는데 검찰 본

인들이 이 사건을 반송할 권한도 없고 보완수사요구권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소를 안 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15억이 다 인정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15억이 인정 안 되더라도 수억이라도 인정된 혐의가 있을 거거든요. 하나도 인정 안 됐습니까? 정말 이 검사 누구인지 진짜 궁금하고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진짜 오히려 검찰이 감사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시간에 동남아 여행 가서 징계받았는데 이것 징계도 정직 3개월입니다. 제가 작년 국정감사 때 감사원장한테 질의했는데 4년째 제대로 징계도 안 받고 정직 3개월에 자기 인건비, 출근도 안 하는 사람이 월급 절반 가까이를 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면 정직 3개월 돼 가지고 직무 배제됐는데…… 지금 직위해제됐는데 직위해제돼도 월급 절반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업무시간 중에 동남아 여행 갔다 온 걸로 정직 3개월 받았다가 이제 15억 뇌물 혐의로 수사받고 기소되니까 직위해제됐는데, 3년째 직위해제돼서 대기 중인데 이분은 절반 가량의 인건비를 받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제대로 징계받고 해야지요.

그러면 공수처가 기소 권한이 없으니까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하고 기소 미루다가, 그러면 보완수사가 제대로 안 됐는데 6월 말에 기소 왜 했습니까? 저는 이것 책임지기 싫어서 검사가 기소했다고 봅니다. 15억 전체 혐의는 인정 안 됐겠지요. 그런데 수억이라도, 수천만 원이라도 인정됐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마지막 공소시효 막바지에 다다라서 6월쯤에 기소했다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3년간 묵혀 왔던 사건을 제가 작년 10월 국정감사 때 이의제기했고요. 그리고 지금 정권 바뀌고 나서 6월에서야 공소시효 만료되기 전에 기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당 수사검사가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혹시 윗선에서 막았는지 감사원에서 막았는지 꼭 이것 감찰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사건의 기소가 왜 이렇게 지연됐는지에 대해서 상황을 면밀히 좀 파악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석 장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혁 위원 법원행정처장님, 오늘 전문위원의 보고가 이렇게 돼서 확인 좀 하려고 합니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경영판단의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된 경영판단의 원칙을 우리 형법에 그대로 적용하여 처벌을 배제할 경우 회사경영과 관련하여 성립하는 형법상 업무상배임죄가 사실상 사문화될 수 있다는 견해 등을 충실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전문위원이 줬는데 민법에서 적용하는 경영판단의 원칙이 민법에만 그동안 적용됐던 것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만 적용됐던 것이 아니라 형법상의 배임죄에 대해서도 경영판단의 경우에는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던 판례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장동혁 위원 그러니까 경영판단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만, 위법성의 경우에만 적용됐던 것이 아니라 형법의 배임죄의 고의 인정 여부에 있어서도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해서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고의를 부정해 왔었

다.

그리고 더군다나 꼭 그런 법리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형법상의 위법성 개념과 민법상 손해배상이나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위법성 개념을 볼 때는 오히려 형법상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민법상 위법성의 개념을 더 넓게 인정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형법상 죄가 되지 않더라도 민법상 경영판단의 원칙에 의해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지요.

따라서 민법상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돼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그보다 훨씬 더 위법성을 엄격하게 인정하는 형법의 경우에는 구성요건 고의 판단에 있어서 당연히, 더 넓은 위법성 개념을 가지고 있는 민법에서도 경영판단의 경우에는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형법에 있어서는 더더군다나 그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아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민법상 적용되는 경영판단의 원칙도 아니고 형법에도 이미 적용돼 왔었을 뿐더러 민법에서 경영판단의 원칙으로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형법에서도 당연히 더더군다나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위원님 말씀 취지에는 제가 공감합니다.

다만 전문위원 의견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시다시피 이번에 상법이 개정되면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종전에는 회사였다가 전체주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장동혁 위원** 예.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러다 보니까 형법에서는 여전히 종전의 회사를 대상으로 이사가 충실의무를 지는 걸 전제로 해서 배임죄의 책임이 인정되고 또한 경영판단의 원칙에 의해서 책임의 고의가 부정되는 이런 법제하에서, 여기서 그 부분에 대한 종전의 판례의 법리를 그대로 도입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상사 영역이나 민사 영역에 있어서의 책임 영역하고 형사책임 영역하고의 관계, 전체적인 체계 정합성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마도 소위에서 조금 더 논의를 해서 이 두 부분이 충돌되지 않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민사적인 영역과 형사적인 영역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장동혁 위원** 이사와 회사에 대해서는 그동안 당연히 계약상 원칙에 의해서 책임이 인정됐지만 판례에 의해서 주주에 대해서도, 전체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사가 활동해야 된다라고 해서 주주에 대해서도 사실상 판례는 책임을 인정해 왔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규정하든지 간에, 물론 법에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법정 책임이 발생했지만.

따라서 그동안 판례에서도 이사가 전체주주의 이익을 위해서도 활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책임을 인정했었던 그 법리에 비추어 본다면 지금 법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경영판단의 원칙을 달리 해석해서, 저는 이것이 달리 해석될 여지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따라서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이춘석** 다음은 먼저 신청하신 전현희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전현희 위원** 정성호 법무부장관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시대의 화두인 검찰개혁을 잘 이끌어 나가실 적임자다 생각합니다. 기대가 매우 큽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현희 위원 최근의 3대 특검의 성역 없는 수사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박수를 보내고 계십니다. 정권교체의 효능감을 느낀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고 계신데요.

그런데 이런 특검 수사를 보면서 한편으로 그동안 검찰이 뭘 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지금 특검이 수사하는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서 기존의 검찰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무혐의, 면죄부를 발부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검찰의 경우에 지귀연 재판부의 유례없는 시간 단위 계산으로 윤석열이 석방된 것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포기했습니다. 이것은 저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는데요.

아까 장관님께서 검찰은 그냥 습관적으로 항고를 하거나 상고를 하는 업무 행태를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당시에 이 사안에 대해서 아주 이례적으로 즉시 항고를 포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다시 한번 항고를 해 가지고 판단을 받았어야 될 그런 사건입니다.

○전현희 위원 심우정 검찰총장이 현재 퇴임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김건희의 16개 범죄 의혹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특검의 이 내용에 대해서도 검찰은 대부분 무혐의 내지 수사조차 하지 않았거나 황제조사를 하는 등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그래서 범죄를 낱낱이 파헤쳐야 할 수사기관이 도리어 범죄를 은폐하는 기관으로 전락한 것이 지난 윤석열 정권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검사징계법을 찾아봤습니다. 검사징계법 2조 2호에 보면 ‘검사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했을 때는 그 검사를 징계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청법 4조 1항 1호에 따르면 ‘부패·경제 범죄 수사와 공소제기는 검사의 직무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의 행태는 윤건희 부부의 부패·경제 범죄를 눈감아 주고 사실상 직무를 유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이 법에 의한 징계 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하여튼 저희들이 엄정하게 수사권이 제대로 행사되고 또 제대로 기소됐는지 다 살펴볼 계획입니다.

○전현희 위원 그리고 지난 대선 당일에 박성재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 조상원 제4차장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그런데 징계법에 따르면 퇴직희망 검사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것을 확인하고 사표를 보류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시 법무부장관이 범죄혐의자인 이창수, 조상원의 징계를 피하게 하고 도주를 도와준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좀 살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알겠습니다.

○전현희 위원 그래서 전임 법무부장관이 했던 이런 여러 가지 과오나 범죄행위에 대해서 신임 법무부장관께서는 잘 살펴보시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전현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전 정권에서 사실상 검찰이 정치공작에 가까운 증거 조작 등을 통해서 수사와 기소권 남용을 했습니다. 여기의 대표적인 예로 이화영 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관련해서 검찰이 진술세미나나 연어 파티 등을 해서 증거 조작을 한 의혹이 제기됐고 또 배상윤 회장이 인터뷰에서 이 대북송금 사건이 경기도와 사실상 무관한데 검찰이 증거 조작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것도 있습니다. 또한 대장동 사건에서 주요 증인인 정영학 회계사가 자신이 평가한 기준이 아니라 검찰이 조작한 증거로 그 기준을 상향해서 제시했다 이런 발언을 한 바가 있는데요. 이런 사안이 사실이라면 이 모든 것은 검찰이 증거 조작을 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사실상 검찰이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검찰이 증거 조작을 했다면 심각한 범죄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내부적으로 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어쨌든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중대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하면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겠지요. 하여튼 저희도 그런 생각하에서 제대로 면밀히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전현희 위원 감찰이나 이런 것 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위원장 이춘석 다음은 조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성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배숙 위원 정성호 장관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상법과 형법 개정안이 나왔는데 상법이 주주에 대한 충실험의무 개정안이 통과가 됐고요. 그 뒤에도 개정을 앞두고 있는 여러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조배숙 위원 그래서 그동안 대주주들이 전횡을 해서 소액주주한테 손해를 끼쳐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아야 되고 주식시장 거래가 투명하고 정상화되는 목표를 가지고 해 나가야 되는데……

또한 한편 당사자는 기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개정안을 검토할 때 한쪽, 다른 쪽 당사자인 기업들도 같이 토론회를 한다든지, 그래서 법무부에서 그런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기업 쪽의 의견을 저희들이 듣고서 법안 심사 과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장관님은 아주 굉장히 합리적인 분으로 알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원만하게 잘 정리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쳐장님, 지금 특검에서 계속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집행이 되고 있습니

다.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조배숙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특검에서 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는 것을 보면 특검도 특검이지만 법원에서 이것을 신청하면 바로 내주는, 말하자면 자판기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물론 수사를 하려면 거기에 협조를 해야 되고 법원에서도 나름대로 그 부분에서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해 줘야 될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보면 어떤 사람은 또 참고인이에요. 참고인이면 본인이 그냥 임의 제출하겠다 그런 의사를 분명히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없이 계속 국회 사무실까지 와 가지고 의원회관까지 와 가지고요,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임종득 의원 그랬지요. 그다음에 이철규 의원도 그랬지요. 망신 주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뭘 압수수색을 했는지 소득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하면 수단이 적합해야 되고 또 침해가 최소화돼야 되고 법이 균형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이런 점에서는 법원이 걸러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나아가서 지난 금요일 날 여의도순복음교회하고 극동방송 사무실 또 목사님들 자택까지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참고인 신분이에요. 그리고 그분들도 이 얘기를 하면 분명히 협조할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오늘 보니까 한교총에서 성명이 나왔어요. 여기 김종혁 대표회장님이신데요. 여기에 대해서…… 더군다나 교회라는 데는 그래도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것은 신중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특히 법원에서 앞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때, 물론 수사를 해야 됩니다. 하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뭔가 요건이 있고 좀 걸러야 되는데 그냥 신청하는 대로 바로바로 발부해 주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 압수수색 영장의 무게만 떨어지는 거예요. 우르르 오고 카메라 오고 그렇지만 실제로 관련이 없는 거예요.

사실 임종득 의원님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 과거에 채 상병과 관련된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는 국회에서 사용하던 거기 때문에 그 이전 자료는 없어요. 상당성이 없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장 발부가 너무 신중하지가 않고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법원의 권위에도 문제 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영장 청구가 계속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원 내에서 어떤 한계나 좀 신중해야 되겠다는 이런 분위기를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존경받는 법조인이시기 때문에 영장재판의 어떤 중요성이나 그것이 법관들과 국민들에게 가지는 합의를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사실은 최근에 영장재판이 마치 본안재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으로 인식이 되고 있어서 영장재판을 맡는 법관들은 여러 법관들 중에서 동료 법관들이 이분 정도면 영장재판을 맡길 수 있다라고 해서 추천된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개인이 기록에 의해서, 서류에 의해서만 재판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때로는, 최근에 와서는 압수수색 영장이 너무

기각된다 이런 비판이 있는 것도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기도 했습니다. 한 건, 한 건이 그분들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영역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또 대상자에 따라서 적정성 있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조금 더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최근에도 국회 입법이 발의되어 있는 것처럼 사전심문제 등을 통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 보고 그에 맞춰서 적확한 영장 발부가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 빨리 제도화되기를 저희들도 바라고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압수수색 영장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끊임없이 내부 법관들과 소통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열심히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이성윤 위원님 질의하시고, 다음 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윤 위원 전주시을 출신 이성윤입니다.

법무부장관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감사합니다.

○이성윤 위원 이번에 장관님 취임하셨으니까 검찰 인사가 있을 것이라고 검사들은 모두 인사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6월부터 장관님 새로 취임할 때까지 언제 인사를 하느냐, 일손을 놓고 인사만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또 사직서를 낸 분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검사들만큼 인사에 목을 매는 경우가 없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성윤 위원 과거에 일제 친일 경찰들이 능력과 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중용된 사례가 있어서 우리 역사상 오점이 됐다는 사실도 알고 계실 거고요.

저는 윤석열 검찰, 윤석열 정권에 부역하고 또 김건희·윤석열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고 야당에 대해서는,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편파적으로 했던 검사들 반드시 책임을 물어서 이번에 인사에서 책임을 묻고,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건을 조사해서 책임이 있으면 반드시 징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검찰이 12·3 내란에 동조했거나 최소한 부역했다고 이렇게 국민들께서 비판을 하고 있겠습니까? 장관님, 꼭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장관님, 혹시 이기훈 부회장이라는 사람을 들어 보셨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모르는 분입니다.

○이성윤 위원 이기훈 부회장은 삼부토건의 부회장입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 사건의 핵심 피의자입니다. 이 피의자가 특검에서 영장을 청구하자 도망쳤습니다. 그것도 특검 수사가 끝나면 다시 온다 하면서 밀항을 하겠다는 첩보가 있다고 그립니다.

장관님, 혹시 이런 얘기를 들으셨으면 검찰이나 경찰과 협조해서 반드시 이기훈 부회장 체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 정성호 검찰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런데요 장관님께서도 국회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삼부토건에 대해서 작년 9월부터 수사하라고…… 이종호의 삼부 체크, 해병대 단톡방에 삼부 체크 나와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이성윤 위원 그것을 수사하라고 해 가지고 작년 9월부터 금감원에서 수사를 했고 금감원에서 올해 3월 달에 드디어 계좌를 털어서 올해 4월에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또 수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을 다시 금감원에 수사 지휘를 해 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석 달을 허송세월하고 특검 출범하자마자 2주 만에 4명을 영장 청구하자 이기훈 부회장이 도망을 친 거예요. 이렇게 된 원인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찰이 12·3 내란 때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장관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윤석열 즉시 항고 안 해 가지고 풀어 준 거 또 12·3 내란 때 검찰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하나하나 다 해 보면 정말 징계할 사람이 참으로 많을 겁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작년에 서울중앙지검에서 김건희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하면서 검사가 4시간 동안이나, PPT를 만들어서 점심까지 먹지 않으면서 그 불기소한 것을 4시간 동안 설명한 것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이성윤 위원 반드시 문책을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이 계속 또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내란에 부역했다, 내란에 동조했다는 말을 듣고 있는데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이번 인사부터 연루된 자는 확실하게 인사에서 배제를 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일단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엄정한 인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장관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모스탄 말씀하셨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이성윤 위원 확인은 해 보셨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모스탄이 한국에 몇 번 입국했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정확한 횟수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성윤 위원 모스탄의 말을 들어 보면 ‘윤석열은 계엄으로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를 모았으며 잠들어 있는 한국 국민을 깨우기 위해서 한 일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선거에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부정이 있었다’ 또 모스탄은 아니지만 애니 첸이라는 사람은 ‘한국이 지금 공산주의 북한에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다. 한국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구속하고 있다는 것을 미국에 알릴 것이다’ 미국에서 이렇게 부정선거를 외치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윤석열이나 극우 내란세력이 떠드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장관님, 모스탄 한국에 한 달만에 두 번을 입국해 가지고 이런 말을 하고 다닙니다. 대한민국의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거나 내란을 선동하는 자에 대해서는 영구히 입국 금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석 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위원** 법무부장관님, 내란 종식의 최대의 정점은 검찰개혁에 있습니다. 잘 아시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검찰이 제 역할을 못 했던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께서 청문회에서도 약속한 대로 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말씀한 대로 기소권 그리고 수사권 분리해서 확실한 개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회 때 제가 건진 법사에게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부인이 김건희 여사에게 인사 청탁해 달라고 했다, 확인해 달라. 해 준다고 했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박지원 위원** 확인하셨어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아직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했는데 이게 간단한 사항이 아니어 가지고요 쉽지는 않을 겁니다.

○**박지원 위원** 언제 할 거예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박지원 위원** 그러면 왜 청문회 때는 한다고 그러셨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아니, 저희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드린 대로 그러한 사실이 있었는지 최대한 확인해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법원행정처장님, 지금 내란 특검, 3대 특검이 아주 잘하고 있는데요. 사법부에서 신청하는 구속영장에 대해서, 물론 사법부에서 판단할 일이지만 기각이 너무 많아요. 특히 외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드론사령부에서 드론을 평양으로, 김정은 15호 그리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용대 드론사령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됐어요. 드론사령부에서는 평양에서 돌아오면 중간에 낙하되게 파손시켜라 이런 것까지 증거로 나타나고 있는데……

아니, 김정은을 증인으로 불러야 되나요? 특검이 평양에 가서 조사해야 되나요? 과학적인 문제가 있는데 김용대 사령관 영장 기각하면 외환 수사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위원님께서 평소 사법부에 대해서 많이 존중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조배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도 답변드린 것처럼 영장 담당하는 법관들은 그 당시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판단하는 것으로 저희들 믿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자료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평양 갈 수 없잖아요. 김정은, 내란 특검으로 불러들일 수 없잖아요. 과학적 증거가 있는데 그런 중요한 드론사령부 김용대 사령관의 영장을 기각하면 사법부에서는 내란 수사를 못하게 하고 있다, 그렇게 국민들은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저는 주로 영장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종국적인 재판에 있어서 과도기 중간적인 그런 판단에 불과하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 단계에서 해당 법관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저를 믿고 있고 위원님께서도 믿어 주십사 부탁

을 드립니다.

○**박지원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한다고 그러면…… 아니, 외환 특수하잖아요. 그리고 과학적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법부를 간섭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것은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박지원 위원** 법무부장관님, 제가 지난번 청문회 때 질문했습니다마는 2021년 5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광주 5·18 정신적 피해자에 대한 보상 판결을 내렸다는 것 말씀드렸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런데 양부남 의원이 행안위에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을 연장해 달라 하는 법안을 냈는데, 윤석열 법무부에서 반대했는데 정성호 장관께서는 찬성하신다고 그랬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박지원 위원** 국가폭력에 의거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취임하셨으니까 그것 빨리 행안위에 의견 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알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리고 오늘 우리 법사위에서 가결시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헌법재판관께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 들쭉날쭉, 배상에 대해서 2배, 4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국가폭력에 의거해서 희생된 그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보상 규정을 만들어서 형편에 맞게끔 해 주는 것이 좋지, 그 사람들이 다시 소송을 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법무부에서 그런 형평성 있는 규정 만들 생각 가지고 계세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것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적극 검토해 보세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박지원 위원** 꼭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춘석** 주진우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김용민 위원님.

○**주진우 위원** 법원행정처장님, 얼마 전에 제가 검찰청, 검찰 4법에 대해서 대법원의 공식 입장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원론적인 답변을 하기는 하셨는데요. 국가수사위원회도 신설하게 되고 중수청도 새로 설치하게 되고 또 검찰에서 수사권은 아예 없어지게 되고 기존의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와의 관계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국가수사위원회 신설과 관련된 것은 법원행정처에서 보기에도 뭔가 우리 사법체계의 균간을 바꾸는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계신 거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형사사법체계의 균간을 바꾸는 중요한 과제기 때문에 신중히,

이번에 공청회에서 나타난 부분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좋은 법안이 나올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주진우 위원** 저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국민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직접적인 데다가 일단 제도가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법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재정신청 제도하고 국가수사위원회와의 업무 충돌 문제도 생기고요.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잘 구분하지 않는 고소나 고발이나 112 신고에 따라서 이의제기 절차가 다르고 그로 인해서 기소가 됐을 때도 일부 범죄는 공수처가 기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재판의 신뢰나 속도 이런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제도와 관련해서는 충분히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시간에 쫓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에서는 피해자소추주의를 취하지 않고 국가소추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로 피해 입은 국민들이 국가로부터 충분한 형사사법 절차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신중하게 잘 검토되어서 도입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저희들이 드린 바 있습니다.

○**주진우 위원** 이번에 헌법재판소 재판관님하고 재판소장님 관련해서 인사청문회를 보니까 대법관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그분도 오랜 법관 생활을 하셨는데 대부분 반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법원행정처에서도 그 부분을 많이 우려하고 계신 거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저희들도 이번에 김상환 후보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결국에는 사업이 망하고 나서 바로 잡아진들 무슨 의미가 있고 또한 피고인을 직업으로 달고 다니면서 피해자의 가슴에 못을 박는, 또 구속기간에 한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결국에는 재판이 오래 길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소송이 사실상 1심, 늦어도 사실심의 종심이라고 할 수 있는 2심에서 확정될 수 있도록 사실심을 보강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고 그에 부수해서 상고심제도 개혁도 덩달아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주진우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헌법재판관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관으로 가시니까 좀 입장이 다르시던데, 저는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늦어질 수 있다. 그리고 한정적으로 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을 경우에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권리구제도 늦어지는 데다가 언제 어떻게 됐는지 제도가 복잡해지면서 사법부의 신뢰도 저는 근본적으로 흔들릴 거라고 보거든요. 그 점에 대한 견해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첫 번째로 이번에 김상환 후보자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부분은 저희들은 개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의 문제가 아니라 개헌으로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보다 가장 더 근본적인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즉 재판의 신속한 확정, 권리구제에 있어서 치명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 지금도 수많은 사건들이 1심, 2심, 3심에서 올라오고 또 저희들이 자고 일어나면 생기는 큰 사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들에 있어서 조기에 확정되지 않고, 왜냐하면 헌법적인 기본권

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건에 있어서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재판소원 사유로 삼으면 당연히 현재에서는 그중에서 고른다 하더라도 결국 잠재적으로는 모든 사건이 재판소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면 무한정 재판의 확정이 늦어지는데 재판 소송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우리 중서민들에게 얼마나 큰 재판 청구권의 실질적인 침해로 돌아갈지 이 부분이 저희들은 정말로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위원** 법무부장관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지금 행정처장님이 우려하시는 게 전체적인 법조계의 일반적인 우려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식** 김용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위원** 장관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그리고 오늘도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 검찰개혁에 제 정치적 명운을 걸고 있는데 장관님께서도 장관으로서의 명운을 걸고 검찰개혁을 완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의 가장 큰 임무고 소명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김용민 위원** 그리고 그에 못지않은 게 이 내란, 12·3 내란을 완전하게 종식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특검이 수사는 하고 있지만 법무부 내에서 그리고 검찰 내에서 12·3 비상계엄 때 협조하거나 동조했던 움직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미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고 제보도 들어왔습니다. 구치소에 국회의원이랑 잡아들인 사람들을 수감시킬 독방을 마련한다든지, 그래서 그 무렵에 구치소 직원이 퇴근했다가 갑자기 새벽에 다시 출근해서 확인을 하는 등 이런 움직임들이 분명히 확인이 됐고 보도도 됐습니다. 그리고 검사들은, 당시 선관위에 그 새벽에 대검 검사 2명이 갔다라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취임하셨으니 즉시 감찰에 착수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태의 진상을 밝혀 주시고 감찰 결과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수사 의뢰를 하시거나 아니면 빠르게 징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문제가 됐던 사람들, 심우정, 이진동 대검 차장 그리고 당시 신용해 교정본부장 이미 다 퇴임했습니다. 감찰이 시작되거나 수사가 시작될 것 같으니까 이미 다 퇴임해버린 것이에요. 아직도 남아 있는 사람들 중에서 숨어서 감찰 혹은 징계, 수사 이런 것들을 방해하거나 증거 인멸할 수 있으니 신속하게 감찰에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관련해서는 지금 고위 검찰관계자들은 대부분 퇴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감찰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진상을 밝힐 수 있을지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특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법무부 입장에서는 진상이 밝혀질 수 있도록 특검 수사에 적극 협력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또 다른 부분에서 감찰의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장관님, 저는 지금 특검의 수사가 우선이 아니라 감찰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검 검사, 대검에서 그날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검사들이 선관위에 나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법무

부나 검찰에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해서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불분명한 상태로 남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이 언제 수사할지, 어떤 혐의로 수사할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법무부에서 먼저……

검사징계법도 개정돼서 직접 감찰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김용민 위원** 이런 부분들은 감찰을 통해서 미리 확인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미 증거가 없어지고 있고 입 맞추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내부에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리고 행정처장님, 윤석열에 대한 추가 기소가 있었습니다. 이게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5부로 배당이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존에 재판을 하던 지귀연 판사의 재판부로 배당된 게 아니라 다른 재판부로 배당됐습니다. 아마 이 뉴스를 보신 국민들께서는 ‘다행이다’라고 가슴을 쓸어내리셨을 것 같은데 이게 혹시 병합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두 재판부의 의사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당 법원에서의 병합 혹은 재배당 결정이 있어야만 되는 사안인데, 지난번에도 질의하셔 가지고 저도 뉴스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기존의 재판부에서는 올 연말까지는 사건을 처리할 계획을 진작에 공표를 하고 또 최근에 확인해 보니까 12월까지는 재판 일정까지 또 법정까지 다 확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부분들이……

○**김용민 위원** 35부가?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아니요, 기존의 지부장……

○**김용민 위원** 지귀연?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해당 법원에서 적절하게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아니지요. 국민들께서는 지귀연 재판부로 가는 것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계신데 지금 다른 재판부로 배당된 것이 그리로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아마 진짜 깜짝 놀라실 겁니다. 게다가 지금 지귀연 판사에 대한 감찰은 왜 소식이 없는지 이것도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짧게 말씀 주시고, 배당 안 되게 해 주십시오. 그쪽으로 넘어가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병합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 부장님의 감찰, 내부 윤리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위원님한테도 저희들이 간단하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일차적인 조사는 끝났지만 현재 공수처에서 조사 중인 부분이 있어서 그 전체를 우리 국민 눈높이의 관점에서 보기 위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전해 들었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용민 위원 병합되지 않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답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잘 아시겠지만 그 부분은 해당 법원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다만 오늘 위원님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 해당 법원에서도 신중하게 검토하는 데 참고가 될 것으로 봅니다.

○김용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춘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법원행정처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통 쉽게 뭘 잊어버리는데 우리 대한민국 사법부는 내란이 일어난 후에 서부지법 폭동, 이 폭도들에 의해서 법원의 간판이 떨어지고 정문이 파괴되고 유리창이 깨지고 집기가 다 깨지는 것을 별씨 다 잊지 않았나 하는 두려움이 듭니다.

지금 특별검사는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면 특별히 검사를 임명해서 특검을 합니다. 그런데 법원이 재판을 잘못한다고 그래서 법원한테 그걸 뺏어서 우리 정치권도 특판 만들자라고 주장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사법부를 믿고 신뢰한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뒤집어 보면 저는 그 책임의 무게도 훨씬 더 크게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란 특검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이 내란 특검은 저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현정질서를 완전히 파괴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존립의 문제, 존망의 문제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이것을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고 지금 특검이 출발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면 대한민국을 올바로 세울 수도 없고 우리 후손들한테도 역사를 바로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특검은 저희가 한시적으로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가면 이것이 그대로 묻힙니다. 그래서 제가 법과 원칙에 따르지 않는 사법부의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특수한 상황에서 특수하게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고려되어야 하고 일반 범죄나 일반 사건처럼 장시간이 투여되는 것과 동일한 원칙과 잣대로서 이것을 본다고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거나 뭘 하거나 영장 청구를 하거나 이것들이 번번이 법원에 의해서 기각된다고 해서 그 진실이 안 밝혀진다고 하면 법원도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특검이 아니라 특판이 생길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우리 사법부도 같이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및 26항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김용민 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들께서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관장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보좌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및 언론인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산회)

---

### ○출석 위원(15인)

곽규택 김기표 김용민 박균택 박은정 박지원 박희승 신동욱 이성윤 이춘석  
장경태 장동혁 전현희 조배숙 주진우

### ○출장 위원(2인)

서영교 송석준

### ○청가 위원(1인)

박준태

###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전문위원 김성완

전문위원 박혜진

전문위원 이은정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법무부

장관 정성호

교육부

차관 최은옥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국토교통부

제2차관 강희업

인사혁신처

처장 최동석

경찰청

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소방청

청장 허석곤

### ○법원측 참석자

법원행정처

처장 천대엽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 참석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김용빈